

 \geq

Contents (I) 구입약가 사후관리 개요

1.	도입배경	및 개념 ······	5
2.	구입약가	정기 확인 주요내용 (ô

구입약가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1.	구입약가	산정기준	11
2.	구입약가	청구방법	15

구입약가 확인

IV

1.	구입약가	정기 확인 방법	21
2.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24

구입약가 정산 및 이의신청

1.	구입약가	정산	47
2.	구입약가	이의신청	49

자주하는 질문(FAQ)······ 55

부록

1.	관련규정 ······	67
2.	사전가중평균가	75
~		

3. 구입약가 산정관리시스템 ……… 76





I. 구입약가 사후관리 개요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가이드





1. 도입배경 및 개념

가. 도입배경

- 1999년 11월 도입된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약품비 지급전에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를 근거로 전산심사를 실시
- 2010년 10월 도입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하에서는 2008년부터 의약품공급업체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을 보고하도록 제도가 변화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내역 목록표 제출 의무를 없애고 약품비를 지급한 후에 의약품 공급내역과 요양기관의 청구단가를 비교하여 실구입가를 확인하는 체계로 전환(사전심사 → 사후관리)
- 2014년 8월 31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폐지되고 9월 1일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되었으나, 요양기관의 약가 산정방법에 대한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

〈그 간의 약가제도 변화〉
'10. 10. 1. 저가구매 인센티브(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10. 2.)에 따라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및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약가 조정(인하) 목적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상한가-구입가)×70%} 지급

'11. 2. 28. 저가필수의약품 등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

퇴장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마약, 희귀의약품 해당

'12. 2. 1.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유예(2년간)

'12. 4. 1. 약가일괄인하로 '12. 2.~'14. 1.까지 유예

'14. 9. 1.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 시행

입원 약품비를 포함한 총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개선

나. 구입약가 사후관리의 개념과 종류

- 요양기관이 청구한 약품비를 지급한 후, 공급업체의 보고내역을 근거로 분기 가중평균가와 요양기관 구입약가(청구단가)를 비교하여 상이 건에 대하여 점검 후 최종 구입약가를 확정
-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약가(청구단가)에 대한 확인, 구입약가 확인 후 착오 청구된 약품비에 대한 정산(환수), 정산의약품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등

구입약가 사후관리 처리 단계



2. 구입약가 정기 확인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

- 1) 관련 근거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
 - 심사평가원장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및 공급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
 - 구입약가 검증체계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 및 현지확인 방법으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확인
- 2) 목적
 - 올바른 구입약가(청구단가) 청구 유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



요양기관 구입약가 사후관리 업무 흐름도



나. 구입약가 정산

- 1) 관련 근거
 -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심사평가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금액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음
- 2) 구입약가 정산심사 개념
 - 구입약가 확인결과, 요양기관이 분기별로 구입한 가중평균가보다 높게 청구한
 약품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차액(청구단가 구입약가)정산
 - 실제 구입약가(분기 가중평균가)와 상이한 단가로 청구한 경우 또는 약품코드
 착오 청구 등

다. 구입약가 이의신청

-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요양기관은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함
- 2) 구입약가 이의신청 개념
 - ·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로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정산심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Ⅱ. 구입약가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가이드

1. 구입약가 산정기준

가. 관련근거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2조(구입약가의 산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144호, 2014. 8. 29.)

나. 적용대상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등재 의약품

다. 산정기준

- 의약품별 분기 가중평균가(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
 -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
 - 분기별 구입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계속하여 구입약가로 산정

구입약가 산정기준 적용 제외 대상

- 방문당 수가 산정기관(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 한약제제

라. 분기 가중평균가 적용기간

의약품 구입분기	구입약가 적용기간 (진료일)
1/4분기 (1월 ~ 3월)	5월 1일 ~ 7월 31일
2/4분기 (4월 ~ 6월)	8월 1일 ~ 10월 31일
3/4분기 (7월 ~ 9월)	11월 1일 ~ 1월 31일(다음년도)
4/4분기 (10월 ~ 12월)	2월 1일 ~ 4월 30일(다음년도)

마. 세부 산정방법

- 1) 매분기마다 의약품구입이 발생한 경우
 - 마분기별 가중평균가를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

9	의약품 구입	내역		청구니	H역	
구입일	구입분기	구입단가	구입량	진료월	단가	내용
2019년 1월 2일	1/4분기	550원	100개	5월 1일	522위	2019년 1/4분기
2월 3일		500원	120개	~7월 31일	523전	가중평균가 적용 ^{주1)}
4월 5일	2/4분기	600원	100개	8월 1일	ନରେଥ	2019년 2/4분기
5월 20일		520원	100개	~10월 31일	500면	가중평균가 적용 ^{주2)}
2019년 7월 1일	3/4분기	600원	200개	11월 1일	ଦେଇଟା	2019년 3/4분기
8월 1일		550원	100개	~2020년 1월 31일	003면	가중평균가 적용 ^{주3)}

〈약가 청구 산정 예시〉

주: 1. 2019년 1/4분기 가중평균가: {(550×100)+(500×120)}/(100+120) = 523 (원미만 4사5입)

2. 2019년 2/4분기 가중평균가: {(600×100)+(520×100)}/(100+100) = 560 (원미만 4사5입)

3. 2019년 3/4분기 가중평균가: {(600×200)+(550×100)}/(200+100) = 583 (원미만 4사5입)

2) 매분기마다 의약품구입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수개월 분을 일시에 구입)○ 의약품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적용

의	약품 구입내	역		청구니	내역	
구입일	구입분기	구입단가	구입량	진료월	단가	내용
2019년 1월 10일	1/4분기	90원	200개			
2월 5일		92원	500개	5월 1일 ~7웤 31일	91원	2019년 1/4분기 가중평교가 적용 ^{주1)}
3월 1일		90원	100개	, <u>E</u> 01E		1002 1 10
4월~6월	2/4분기	구입내역	없음	8월 1일 ~10월 31일	91원	2019년 1/4분기 가중평균가 계속 적용
2019년 7월 10일	3/4분기	100원	500개	11월 1일	100.91	2019년 3/4분기
8월 25일		105원	250개	~2020년 1월 31일	102원	가중평균가 적용 ^{주2)}

〈약가 청구 산정 예시〉

주: 1. 2019년 1/4분기 가중평균가: {(90×200)+(92×500)+(90×100)}/(200+500+100) = 91 (원미만 4사5입) 2. 2019년 3/4분기 가중평균가: {(100×500)+(105×250)}/(500+250) = 102 (원미만 4사5입)

 3) 요양기관이 처음 구입한 의약품인 경우(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 되는 경우)
 ○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하여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는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

<약가 청구 산정 예시>

	품 구입내		청구나	역			
구입일		구입분기	구입단가	구입량	진료월	단가	내용
2019년 1월 7 (최초 구입)	일	1/4분기	550원	300개	1월 7일	550원	최초 구입한
1월 1	4일		500원	200개	~4눨 30일		구입년가 직용
2월	3일		700원	100개	5월 1일	E 40.01	2019년 1/4분기
3월 1	4일		450원	100개	~7월 31일	543원	가중평균가 적용 ^{주1)}
2019년 4월	7일	2/4분기	600원	400개	8월 1일	E0291	2019년 2/4분기
6월 1	4일		550원	200개	~10월 31일	003권	가중평균가 적용 ^{주2)}

주: 1. 2019년 1/4분기 기중평균가: {(550×300)+(500×200)+(700×100)+(450×100)}/(300+200+100+100) = 543 (원미만 4사5입) 2. 2019년 2/4분기 가중평균가: {(600×400)+(550×200)}/(400+200) = 583 (원미만 4사5입)

- 4)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의약품을 새로 구입한 경우(단가변경)
- 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u>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을</u>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의약품으로 계산
 - 상한금액 범위에서 새로 구입한 가격으로 분기 가중평균가가 산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

의	약품 구입니	세역		청구니	H역	
구입일	구입분기	구입단가	구입량	진료월	단가	내용
2019년 1월 7일	1/4분기	550원	300개	5원 1인		2010년 1/1브기
1월 14일		500원	200개	~5월 13일	543원	가중평균가 적용 ^{주1)}
2월 3일		700원	100개			
3월 14일		450원	100개	5월 14일	550원	5월 14일 면경된 구입단가 적용 (5월 14일 이전 구입분 모두 소진)
2019년 4월 7일		600원	400개	~7월 31일		
5월 14일(단가변경)	_ /	550원	200개			
6월 7일	· 2/4분기	500원	200개	8월 1일	533원	단가변경 이후 2019년 2/4분기
6월 20일		550원	200개	~10월 31일		가중평균가 적용 ^{주2)}

〈약가 청구 산정 예시〉

주: 1. 2019년 1/4분기 가중평균가: {(550×300)+(500×200)+(700×100)+(450×100)}/(300+200+100+100) = 543 (원미만 4사5입) 2. 2019년 2/4분기 가중평균가: {(550×200)+(500×200)+(550×200)}/(200+200+200) = 533 (원미만 4사5입)

단가변경 충족요건

새로 의약품을 구입한 시점에서 해당 의약품을 소진하였거나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새로 구입하는 의약품의 가격이
 기존 구입단가와 다른 단가여야 함

단가변경 확인서류

- 거래명세서(반품), 의약품 수불대장 및 재고관리대장(요양기관장 직인 날인) 등 재고량이 없는 사실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이 경우 재고량이 없게 된 일자보다 새로운 단가로 의약품을 구입한 거래명세서상 거래일자가 더 최근이어야 함.

2. 구입약가 청구방법

가.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나. 적용대상

구 분	내 용
요양기관 종별	한방을 제외한 모든 종별(폐업기관 제외)
청구매체	포털, EDI, 디스켓(서면 제외)
보험자 종별	건강보험, 의료급여(보훈 국비지원 제외)
대상명세서	의과, 치과, 약국 명세서(행위별 수가만 해당)
대상의약품	보험 등재약(100/100, 비급여의약품, 산소 등 제외)

다.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항목명	작성 방법
단 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른 단가를 원 미만은 4사5입하여 기재하되 단가가 1원 미만인 경우는 1원으로 기재
1회 투약량	의약품의 경우 1회 투여한 량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4사5입) 기재
1일 투여량, 실시횟수	1일 투여량 및 투약일수 기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4사5입) 기재
총 투	총투여일수 및 실시횟수 기재
금 액	의약품 단가에 1회 투약량, 일투, 총투를 곱한 금액(원미만 4사5입)
변경일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변경 된 경우 또는 코드가 신설된 경우에 변경된 단가 또는 신설단가의 최초 투여(실시)일자 기재

라. 세부 작성요령(포털, EDI 등 전산청구 기준)

- 1) 입원기간 중 분기 가중평균가의 적용시점이 달라지는 경우
- 장기입원 등으로 인하여 입원기간 중에 투약한 의약품의 분기 가중평균가의
 적용시점이 달라지는 경우
 - 실제 의약품 투약일에 해당하는 분기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청구하여야
 하며, 반드시 변경일란에 실제 투약일자를 기재

〈약가 청구 산정 예시〉

의과 진료내역	의약품 구입내역
2019년 4월 1일 최초 입원한 환자에게 헤르벤	○ 매분기마다 헤르벤서방정을 구입하였고,
서방정을 4월 5일부터 15일, 5월 6일부터	분기 가중평균가는 2018년 4/4분기 210원,
10일간 원내 투약하고 청구하는 경우	2019년 1/4분기 240원인 경우

명세서 상병내역									
人出日	비고기능				티저기중	요양개시일			
333	상명명 분류기호 수술 신료과목 상해외인		경에피인	특성기오	최초입원일				
불안정 협심증	1200	무	내과			20190401			
고혈압	I10	무	내과			20190401			

	진료내역									
항	목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주3)}	
03	01	640003910 (헤르벤서방정)		210 ^{주1)}	1	1	15	3,150	20190405	
03	01	640003910 (헤르벤서방정)		240 ^{주2)}	1	1	10	2,400	20190506	

주 :1. 4월 5일 투약한 경우 적용단가는 2018년 4/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2. 5월 6일 투약한 경우 적용단가는 2019년 1/4분기 가중평균가 적용

3. 명세서의 요양개시일과 실제 투약일이 다를 경우 변경일자란에 실제 투약일 기재

 \bigcirc

- 2) 요양기관이 처음 의약품을 구입하여 투약한 경우
- 요양기관에서 처음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의약품의 경우
 -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가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하되,
 반드시 변경일자란에 최초 투약일자를 기재

〈약가 청구 산정 예시〉

의과 진료내역	의약품 구입내역
 2019년 3월 1일~8월 10일까지 장기 입원한 환자에게 3월 1일, 5월 4일, 8월 3일 더모베이트연고를 원내 투약하고 청구하는 경우 	 2019년 2월 5일 더모베이트연고를 최초 구입(단가 510원, 10개)하고, 2월 17일 (단가 450원, 20개), 3월 15일(단가 460원, 500개), 4월 21일(단가 500원, 100개)에 고이트, 것은
	구입한 경우

명세서 상병내역								
사비며			지근과모	사태이이	트저기능	요양개시일		
888	군규기오		진묘파속	경에지진	특성기오	최초입원일		
피부 건조증	L853		피부과			20190301		
상세불명의 건선	L409		피부과			20190301		

	진료내역										
항	목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주4)}		
03	01	650002371(더모베이트연고)		510 ^{주1)}	1	1	2	1,020	20190301		
03	01	650002371(더모베이트연고)		461 ^{주2)}	1	1	5	2,305	20190504		
03	01	650002371(더모베이트연고)		500 ^{주3)}	1	1	3	1,500	20190803		

주: 1.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한 의약품의 청구단가는 분기 가중평균가 생성되기 전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최초 구입가격인 510원 적용 청구

2. 5월 4일 투약한 경우 청구단가는 1분기 가중평균가(461원) 적용 청구

* 1분기 가중평균가 = {(510×10)+(450×20)+(460×500)}/(10+20+500)

3. 8월 3일 투약한 경우 청구단가는 2분기 가중평균가(500원) 적용 청구

* 2분기 가중평균가: (500×100)/100

4. 명세서의 요양개시일과 실제 투약일이 다를 경우 변경일자란에 실제 투약일 기재

3) 의약품 상한금액이 인하된 경우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상한금액이 인하되어 분기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보다 큰 경우 청구단가는 상한금액으로 청구
 - * 상한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청구할 경우 접수단계에서 전산 자동 조정

〈약가 청구 산정 예시〉

의과 진료내역	의약품 구입내역
○ 2010년 4월 19년년 5월 200년년 9일하	○ 2019년 1/4분기 가중평균가는 138원이고

2019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입원한 환자에게 5월 6일 예스티정을 원내 투약하여 청구한 경우 4월 이후 구입내역이 없는 경우 - 단, 예스티정은 2019년 5월 1일자로

상한가가 138원에서 124원으로 인하

명세서 상병내역								
사비며			사레이이	트저기능	요양개시일			
정명명 문뮤기오 구물 신		신묘과속	경에피인	국경기오	최초입원일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외과		V193	20190401		
상세불명의 위염	K297		외과			20190401		

	진료내역									
항	목	코드(분류)	상한가	단가	1회 투약량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3	01	641501100(예스티정)		138	1	1	5	690	20190401	
03	01	641501100(예스티정)		124 ^{주1)}	1	1	10	1,240	20190506 ^{주2)}	

주: 1. 5월 6일 투약한 경우 1분기 가중평균가가 138원임에도 불구하고, 5월 1일 상한가가 인하되었으므로 청구단가는 상한가가 됨(가중평균가로 청구시 접수단계에서 전산 자동 조정)

2. 명세서의 요양개시일과 실제 투약일이 다를 경우 변경일자란에 실제 투약일 기재

1. 구입약가 정기확인 방법

가. 개요

- · 분기단위로(3개월)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한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요양기관이 제출한 서류와 공급업체 확인을 통해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 확인
 - 심사평가원장이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통해 선정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구입 약가 점검 및 확인 요청(웹메일, 웹팩스, SMS 등으로 안내)
-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공급
 내역을 점검·확인 후 제출(증빙자료는 반드시 포털로 업로드)

구입약가 정기확인 세부 업무처리절차

나. 관련근거

-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
 - 심사평가원장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및 공급내역 정보를 활용하여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
 - 필요한 경우 서면 및 현지확인 방법으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확인
- 목적: 올바른 구입약가(청구단가) 청구 유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

다. 구입약가 정기확인 순서

- 1) 구입약가 확인대상
-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 중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청구된 의약품
- 2) 통보방법 및 자료제출
- 통보방법
 - 웹메일, 웹팩스 및 SMS 통보(관할 요양기관 해당 본·지원별 통보)
 - * SMS는 신청기관에 한하여 통보(신청경로: 「진료비청구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SMS신청 - 사용자 등록」 구입약가 확인 선택 및 등록)
- 자료제출: 1차 통보 10일, 2차 통보 4일(1차 제출기한 내 미확인기관 2차통보)
- 3) 접수마감
- 2차 통보 처리기한 마감시점에서 접수마감
 - * 마감 후 요양기관은 자료 입력 및 수정 불가능
- 4) 요양기관 주요 확인내용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하여 청구단가와 분기 가중평균가 확인
- 의약품별 구입내역 관련 구입처, 일자, 수량, 금액, 단가 등 청구단가와 분기
 가중평균가 상이내역 확인(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22

- 5) 증빙자료
- 증빙자료 종류
 - 거래계약서(계약일자, 계약 약품명, 계약단가 등),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재고량 확인서, 의약품수불대장, 재고관리대장 등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일체
- 증빙자료 첨부기준(필수)
 - 공급업체 보고내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을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단가변경, 최초구입) 등
- 6) 추가확인
- 심사평가원 담당자가 구입약가 검증 및 확정단계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추가확인
 - 추가확인 요청 후 3일 이내에 확인 및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
 - * 요양기관이 「공급신고 착오」로 확인하고 공급업체가 「공급신고 맞음」으로 재확인하는 등 요양기관과 공급업체의 확인 내용이 계속 상반되는 경우 등
- 7) 구입약가 확정
- 요양기관은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정된 구입약가 조회
- 확인방법

- 웹메일 및 SMS 통보(관할 요양기관 해당 본·지원별 통보)

- 8) 구입약가 정산
- 구입약가 확인결과, 분기별 가중평균가보다 높게 청구한 약품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차액분을 정산
 - 실제 구입약가(분기 가중평균가)와 상이한 단가로 청구한 경우 또는 약품코드
 착오 청구 등

23

2.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가.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접속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http://biz.hira.or.kr)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업무 안내'로 접속하여 구입약가 확인 개요, 법적 근거, 업무 처리 절차 등 확인

HIRA X 요양기관업무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검색 🔻		Q 2	1색	
업무안내	의료기준관리 진료비	청구 정산관리	모니터링	자동차보험	정보화지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전행과정 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조회 전자청구문서조회 명세서불능신청및내역조회 가지급내역 미청구자료조회 만성질환관리료 청구횟수조회 가정간호기본방문료 청구횟수조회 신청·제출 진행과정 	 형구 몇 동보 견산청구 신청 동서메일신 대행청구기관 의약품관리 의약품길고조 	련 신형 ! 통보 구상이내역 서면확인 !	 ● 控入 ・ 요: ・ 제: ・ 利 ・ 丸! ・ 丸! ・ 丸! 	가평가표접수 양병원환자평가표접: 활환자평가표 제출 활환자평가표 제출 료재료관 리 료재료구입목록표 료재료구입목록표	수 신청	 청구오류 · 청구오류 사진점검 · 청구오류 수정보완 · 청구현장 모니터링 9 요양기관영상자료제출 · 접수목록조회 · 1차 심사자료입력
 원격협진 시범사업관련 자료제출 응급원격협진 시범사업 자료제출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 자료 	 OpenAPI 신초 구입약가 허가초과 약재 허가초과 함2 의료취약지 2 시범사업 안나 접수조회 및 5 	^{일조} 회 2법 신청 호사 연간비 작접지원 시 건비 청구	· 치: 범사업	료재료정보		· 심사보완자료입력

나.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화면구성

- 1) 구입약가 확인 메인화면
- 구입약가 확인 차수별 청구·공급 불일치 품목, 요양기관 통보일자, 접수마감 일자, 처리현황 등을 총괄적으로 확인하고 최종 제출하는 화면

구입약가 확인현황 (매뉴얼 다운로드 가능)

- 청구(구입)단가 및 분기 가중평균가 불일치 대상 품목수 확인
- 요양기관 1차 및 2차 통보일, 추가통보, 접수마감일 확인
- 해당 차수의 청구명세서 진료년월 확인

구입약가 확인목록

- 구입약가 확인에 필요한 각종 서식 다운로드(단가변경 확인서, 최초구입확인서, 단가변경 업로드서식, 단가변경신고내역 등) 및 불일치 상세내역 저장 가능
- '구입약가 확인현황'의 대상품목수를 클릭하면 불일치의약품목록이 조회
 되고 해당 약품코드 클릭 시 해당 의약품 상세 공급내역으로 이동

♠ 홑 > 전	[료비청구 > 의	약품관리 > 두	구입약가 > 구입약기	확인						퓔	계찾기 추가 📗 출력	[팝업] 전	범김요청 도움말
→ 연도	2018 🗸	> 차수	2 •										৭ 조회
0 구입약:	가 확인현황												에뉴얼 다운로드
	연도	차수	대상품목수	진행구분	1차통보일	2차통보일	접수마감일	추가통보일	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진	료년월
	2018	2	17	처리중	20180430		20180517				20180510	2017-11	I ~ 2018-01
 → 조회 후 약품코! 	가 확인목록 서식받기를 미용	B해주세요.		진영구분 - 전체 -	Ŧ					단가변혼	단가변경확인 업로드 당가변경신고	1세식 단가변 2내역다운로드	(경업로드사식받기 역설지장(진화) Q 조화 총 : 17건
순변		약큼	품코드		약품명 전행구분							ž ^	
1		620	600181		페림가비드티,1%주사(니트로글리세린).(10mg/10mL) 처리 중								
2		640	002281		씨제이반코마이신염산염주1그람(수출명·반코린주1그람반코셀주1그람반코마이신씨제이주1그람반코그램주1그람) 처리 중								
3		641	602451				토브라주80밀리그럼	(토브라마이신)				처리 중	
4		641	905661				온세트론주(바이얄)(온단세	트론염산염이수화물)				처리 중	· · · · ·
5		643	502671		클래리컨조시럽125mg/5ml(클레리트로마O)신)_(2,5g/100mL) 처리 중								

구입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메인화면 용어설명[1]							
▶ '구입약가 확인	현황'메뉴							
구 분	내 용							
연도 및 차수	연도별 구입약가 확인차수가 최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과거 불일치 내역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구입약가 확인 및 점검 과정을 '작성 중, 작성완료, 처리 중, 처리완료'로 구분하여 나타남							
진행구분	(작성 중) 요양기관이 확인 중인 경우 (작성완료)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제출 완료한 경우 (처리 중) 요양기관 접수마감 후 심사평가원에서 확인 중인 경우 (처리완료) 심사평가원에서 구입약가를 최종 확정한 경우							
대상품목수	청구단가 대비 공급 가중평균가 불일치 대상 품목수로 품목수를 클릭하면 구입약가 확인목록이 조회됨							
1차 통보일	요양기관 1차 통보일이며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2차 통보일	1차 통보기간 내 미제출 기관에 한하여 2차 통보를 실시하며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4일 이내에 자료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접수마감일	2차 통보 처리기한 마감시점에서 접수마감하며 요양기관은 더 이상 자료입력 불가능							
국기트님이	접수마감 후 심사평가원 확인과정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별도 추가통보							
주가동모일	요양기관은 추가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료 확인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처리기한	통보 종류(1차, 2차 및 추가확인)에 따라 처리기한 자동 생성							
진료년월	해당 차수의 청구명세서 진료년월							

구입	J약가 검증시스템 메인화면 용어설명(2) Ⅰ
▶ '구입약가 확인	목록'메뉴
구 분	내 용
단가변경 확인서	단가변경 신청 시 단가변경 확인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한 뒤, 기관장 확인문서(기관장 직인), 거래명세서와 함께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제출
최초구입 확인서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 경우, 최초 구입한 의약품의 경우 최초구입 확인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기관장 확인문서(기관장 직인)와 같이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제출
단가변경업로드 서식받기 및	단가변경 또는 최초구입 의약품이 많아 건별로 입력하기 곤란한 경우, 단가변경 업로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내용 입력
단가변경업로드	작성 완료 후 단가변경 업로드를 클릭하면 의약품별 단가변경 입력란에 작성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됨
단가변경 신고내역 다운로드	요양기관에서 '현행 차수'에서 단가변경으로 확인한 의약품목록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엑셀저장(전체)	의약품별 구입약가 확인결과, 청구현황(요양개시일자, 청구단가, 공급분기 등), 공급내역(구입처, 구입분기, 구입수량 등)을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약품코드	확인목록에 있는 의약품 약품코드별로 조회
지해그브	의약품별 구입약가 확인 및 점검 과정을 '작성 중, 작성완료, 추가요청, 추가요청, 작성완료'로 구분하여 보여줌.
USTE	추가요청은 심사평가원 담당자가 구입약가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에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 한하여 요청
약품코드 및 약품명	약품코드 또는 약품명을 클릭하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상세내역을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
최종제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입력 완료 후 최종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심사 평가원으로 입력한 자료가 자동전송되며 구입약가 확인현황의 진행구분이 '제출완료'로 변경
(처리완료 후) 처리결과	구입약가 점검 완료 후 심사평가원 담당자가 최종 처리한 결과(공급신고 착오/단가변경/요양기관착오/기타)를 보여줌
(처리완료 후) 일치여부	구입약가 점검 완료 후 최종 산출된 가중평균가와 청구단가의 일치 여부를 보여줌

2) 의약품별 구입약가 불일치 상세화면

 불일치의약품별 상세처리화면으로 청구현황, 공급업체 신고자료 등 공급내역을 점검·확인할 수 있음.

청구현황			이력보7	I ✓ 단가변경(최초구	입) 의약품의 공급	분기는 D(단가변	경)으로 표시됩L	니다.		
약품코드	650100021	순변	1	요양개시일자	청구단가	공급분기	1차 가중평균	·가 :	2차 가중평균가	3차 가중평균기
약품명	가소콜액(시메치	[콘)(군납용:시메:	치콘현탁액	20180106	24	201734				
진료년월	2017-11 ~ 2018-	-01			201824	2010/01/02/02/02/02/02				
공급내역										행추가 행삭?
								1차 가중평균기	ት የ	요양기관
순변	구입처	사업자 등록변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확인결과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자료첨부
1	시평산사	111-11-111	1	가소콜액(시메치콘)	201734	240	1,309	753,984	2	공급신고맞음
	800/4			(8806501000257)						첨부파일
- 단가변경 - 요양기관 공급업체 (가(단가) = 공급금액/(: 의약품은 아래 단가변경 · 확인결과의 '기타'는 식 신고자료	공급수량·적용규 령란에 입력하여 2 ∜제품 청구, 코드'	격)으로 계(5시기 바랍) 입력 착오 등	산되어 집니다. 니다. 등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
- 단가변경 - 요양기관 공급업체 4	가(단가) = 공급금액/(3 의약품은 아래 단가변경 확인결과의 '기타'는 식 선고자료 구입처(사업자등록변	공급수량*적용규 령란에 입력하여 2 석제품 청구, 코드 역 호)	격)으로 계(5시기 바랍) 입력 착오 5	산되어 집니다. 니다. 동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주. 약품명	시기 바랍니다. 구입	일자 구	입수량	적용규격	구입금액	- 구입단기
- 단가변경 - 요양기관 공급업체 : 변	가(단가) = 공급금액/(3 의약품은 아래 단가변경 확인결과의 '기타'는 식 신고자료 구입치(사업자등록변 심평상사(111-11-111	공급수량*적용규 령란에 입력하여 2 상제품 청구, 코드 (호)	격)으로 계(5시기 바랍] 입력 착오 등	산되어 집니다. 니다. 등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주. 약품명 가소콜액(시메치콘)	시기 바랍니다. 구입 2017	일자 구	1,309	적용규격 240	구입금액 753,984	1 구입단기 2
- 단가변경 - 요양기관 공급업체 : 변 1 단가변경	가(단가) = 공급금액/(* 의약품은 아래 단가변경 확인결과의 '기타'는 스 건고자료 구입쳐(사업자등록변 심평상사(111-11-111	공급수량+적용규: 명란에 입력하여 2 (제품 청구, 코드 (제품 청구, 코드	역)으로 계(5시기 바랍) 입력 착오 등	산되어 집니다. 니다. 등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주. 약품명 가소콜액(시메치콘)	시기 바랍니다. 구입 2017	일자 구 -09-27 이전 단가변	'입수량 1,309 경제출건 적용	적용규격 240 단가변경신과	구입금액 753,984 2내역조회	1 구입단기 2 행추가 행석기
- 단가변경 - 요양기관 공급업체 (편 1 단가변경 번 단가변	가(단가) = 공급금액/(3 의약품은 아래 단가변경 확인결과의 '기타'는 식 선고자료 구입치(사업자등록변 심평상사(111-11-111 경구분 구입치	공급수량+적용규: 당란에 입력하여 3 (제품 청구, 코드) (호) (11) 사업7	적)으로 계: 5시기 바람 입력 착오 등 다변호	산되어 집니다. 니다. 등인 경우에만 선택하며 주. 약품명 가소콜액(시메치콘) 약품명	시기 바랍니다. 구입 2017	열자 구 -09-27 - 이전 당가변 구입일자	1,309 공제출간 적용 적용규격	적용규격 240 단가변공신과 구입수량 ·	구엽금액 753,984 고내역조회 - 구입금액 구	· 구입단기 2 행추가· 행석? 입단가 파일첨
·····································	가(단가) = 공급금액/(3 의약품은 아래 단가변경 확인결과의 '기타'는 식 신고자료 구입치(사업자등록변 심평상사(111-11-111 경구분 구입치 변경 심평제역	공급수량·적용규: 로맨에 입력하여 3 대제품 청구, 코드 11) 11) 	역)으로 계(5시기 바람) 입력 착오 등 다변호 -12345	산되어 집니다. 니다. 등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주. 약품명 가소롤액(시메치콘) 가소를액(시메치콘)(군납	시기 바랍니다. 구엽 2017 용:시메치폰현탁	<mark>알자 7</mark> -09-27 □ 이전 당가변 구입당포 2018-01-05	8 입 수량 / 1,309 · · · · · · · · · · · · · · · · · · ·	적용규격 240 단가변공→ 구입수량 1 10	구입금액 753,984 그내역조회 구입금액 구 100,000	남 구입단기 2 행추가 행석 입단가 파일침
- ビン地湾 - ビン地湾 - 金양기관	가(단가) = 공급금액/(3 의약품은 아래 단가변경 확인결과의 '기타'는 식 신고자료 각입치(사업자등록번 심평상사(111-11-111 경구분 구입치 변경 심평제역 = 구입금액/(구입수량- 익약품은 단가변경과 동	공급수량+적용규: 로엔에 입력하여 3 (제품 청구, 코드) (11) (123-12 (123-12 (123-12 (123-12) (12	적)으로 계(5시기 바람) 입력 착오 등 -12345 나보3대집L 다.	산되어 집니다. 니다. 등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주. 아감물액(시메치콘) 가소물액(시메치콘)(군답 I다.	시기 바랍니다. 구입 2017 용:시메치 폰현탁	열자 구 -09-27 □ 이전 단가변 구입일자 2018-01-05]	1 ,309 3제출간 적용 48규격 1 [적용규격 240 단가변경	구입금액 753,984 그대역조회 구입금액 구 100,000	· 구입단기 2 행추가 행삭 입단가 파일첨
· · · · · · · · · · · · · · · · · · ·	가(단가) = 공급금액/(3 의약품은 아래 단가변경 확인결과의 '기타'는 식 신고자료 구압쳐(사업자등록변 심평상从(111-11-111 경구분 구압체 변경 심평제역 = 구입금액/(구입수량- 의약품는 단가변경과 동	공급수량+적용규: 일란에 입력하여 2 (재품 청구, 코드) 11) 11) 11) 11) 11) 123-12 작용규격)으로 계 (일하게 적용합니	역)으로 계(5시기 바람) 입력 착오 등 -12345] -12345] 다.	산되어 집니다. 니다. 등인 경우에만 선택하여 주. 아송품명 가소물액(시메치콘) 가소물액(시메치콘)(군답	시기 바랍니다. 2017 용:시메치 콘현탁	일자 7 -09-27 ○ 이전 단가변 구입일자 2018-01-05	1,309 경제출건 적용 적용규격 1	적용규격 240 단가변공 기입수량 10	구입금액 753,984 2내역조회 구입금액 구 100,000	· 구입단: 2 행추가 행석 입단가 파일침 10.000 첨부피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의약품 상세화면 용어설명 |

▶ 청구현황

구 분	내 용
요양개시일자	청구·공급 불일치의약품이 처음 발생된 명세서의 요양개시일자
청구단가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품에 대하여 급여 청구한 단가
공급분기	진료월에 따른 공급분기로 해당 분기 내역이 없으면 이전 공급분기 및 가중평균가를 보여줌
1차 가중평균가	공급업체가 보고한 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가중평균가 (분기 총 공급금액을 총 공급수량으로 나눈 값)
2차 가중평균가	요양기관이 공급신고 착오 또는 미확인한 경우 공급업체가 재확인한 내역을 근거로 산출한 가중평균가
최종 가중평균가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확인내역과 공급 보고내역을 근거로 최종 확정한 가중평균가(확정단가)

▶ 공급내역 및 단가변경

구 분	내 용
구입처 및 사업자 등록번호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한 구입처 및 사업자등록번호 제공 사업자등록번호는 총 10자리 숫자로 구성
표준코드(13자리)	의약품 표준코드는 의약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고유하게 설정된 숫자로 최소 포장단위에 부여
적용규격	의약품별 포장단위
	공급내역에서 구입처 또는 적용규격 착오 시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 여 내용 입력
행추가 및 행삭제	단가변경(최초구입) 의약품인 경우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입력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행삭제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행을 추가하여 입력하는 경우는 구입처 및 약품명 등을 직접 입력하 지 않고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도록 팝업창 생성
단가변경 신고내역 조회	요양기관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이전 차수'에서 단가 변경한 의약품 목록 및 상세내역을 조회

다. 의약품별 구입약가 점검 및 확인방법

◆ 공급내역(분기 가중평균가)에 대한 요양기관 확인기준 ◆

공급신고 맞음	공급신고 착오	기타
공급업체 보고내역(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등)이 모두 맞는 경우	공급업체,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등 공급업체 보고 내역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요양기관 청구착오(삭제품목 청구 또는 코드 착오)인 경우

1) 공급신고 맞음

 ○ 요양기관 확인결과, 공급업체 보고내역의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이 모두 맞으면 요양기관 확인결과 「공급신고 맞음」으로 확인
 - 공급수량을 클릭하여 일자별 공급내역 확인
 ▶ 구입약가 최종 처리완료시 「요양기관 착오」로 처리됨

학명 전 종비 플렉스주 2017-11 ~ 2018-01 2017120 18,709 201734 18,166 양국년 월 2017-11 ~ 2018-01 18,709 201734 18,166 행숙가 전 가 응 한 가 가 응 한 가 가 하는 가 다 하는 가 하는 가	약품코	<u>I</u> ⊆ 644903890	순변	3 88	개시일자	청구단가		공급분기		1차 가중평규가	
3 급년월 2017-11 ~ 2018-01 10111111 10111111111 101111111111 10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약품명	콤비플렉스주		20	171220	18 709		201734	18,186		
한 1 1 1 1 1<	진료년	Žali 2017-11 ~ 2018-01 10, r03 201734							10,100		
$ \frac{1}{2} $	> 공급내	역							행추기	가 행삭제	
관련 구입처 사업자 등록변호 약품량 (표준코드) 값 보기 관용규격 폰급구량 용급금액 용급단가 확인결과 사업 관망상사 12-12-12321 관비클랙스주 (88006449038916) 201734 1 686 12.475.596 18.186 좋급산고 약 사망 12-12-12321 관비클랙스주 (88006449038916) 201734 1 686 12.475.596 18.186 좋급산고 약								1차 가중평균기	ት	요양기관	
실패 시행 시행 수행수량 수행금액 수행금액 자료컵부 실행 관계 12-12-12321 홈비플렉스주 (8806449039316) 201734 1 586 12.475.596 18.166 콜리스포맞음 실행 관계 201734 1 586 12.475.596 18.166 콜리스포맞음 사망 ····································	순변	구입처	사업자 등록변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E)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확인결과	
실 명상사 123-12-12321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자료첨부	
지금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1	시피사내	123-12-12321	콤비플렉스	주 201734	1	<u>686</u>	12,475,596	18,186	공급신고맞음	
가중평균가(단가) = 공급금액/(공급수량+적용규격)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단가변경의약품은 아래 단가변경란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으와기과 화여경과의 '고타'는 산제품 청구, 코드의령 창의 들이 경우에만 성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4		(8806449038	(916) 201134					첨부파일	
표정기를 확인할 화가 가다 든 뒤세움 정부, 꼬드립러 뒤도 정말 정부에는 단독하여 무서가 바랍니다.	1 - 가중평 - 단가변 - 요양기	심평상사 평균가(단가) = 공급금액/(변경의약품은 아래 단가변경 기관 확인결과의 '기타'는 스	123-12-12321 공급수량+적용규격) 5 형란에 입력하며 주시: 박제품 청구, 코드입력	(880644905 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기 바랍니다. 착오 등인 경우에만 선	916) 201734					쳠	

순변	구입처(사업자등록번호)	약품명	구입일자	구입수량	적용규격	구입금액	구입단가
1	심평상사(123-12-12321)	콤비플렉스주	2017-08-05	300	1	5,455,800	18,186
2	심평상사(123-12-12321)	콤비플렉스주	2017-08-24	386	1	7,019,796	18,186

2) 공급신고 착오

▶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내역과 공급업체에서 보고한 내역이 상이한 경우, 공급업체 2차 확인 대상이 되며 요양기관 증빙자료 비교하여 최종 처리

○ 거래내역 확인을 위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

(가) 공급수량 및 공급금액 착오

○ 공급신고 착오 선택 후 수정수량, 수정금액에 실제 거래내역 입력

⊙ 공급[H역							행격	화가 행삭.	'제
						1	l차 가중평균기	ŀ	요양기관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금액 공급단가 확		
					수정수량	수정금맥	수정단가	자료첨부		
1	ALTRIALLI	102 10 10245	페링가니트0.1%주사(니트로글	201014	10	50	1,184,500	2,369	공급신고착오	•
	993V	집평양자 123-12-12345 (8806205001826)		201014	10	40	956,000	2,390	첨부파일	

(나) 구입처 및 적용규격 착오

- ※ 구입처 및 적용규격(표준코드)에 착오가 있는 경우는 기존 공급내역에서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행추가'하여 새로 입력
- 기존 공급내역란의 수정수량, 수정금액을 모두 "0"으로 입력하고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
- 행 추가하여 구입처, 적용규격 등 정확한 공급내역을 입력하고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

(다) 구입분기 착오

0 공급	내역							행추.	가 행삭제	
	순번 구입처	구입쳐 사업자 등록번호					I차 가중평균기	ł	요양기관	
순번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확인결과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자료첨부	
1	(조)시펴파	001 00 00101	페링가니트0.1%주사(니트로글	201724	10	50	1,184,500	2,369	공급신고착오	٠
U)	(+/888	251-25-25101	(8806205001826)	LOTION	10	0	0	0	첨부파일	
2	(乙)AI開TF	001 00 00101	페링가니트0,1%주사(니트로글	201724	1				공급신고착오	٠
2	(+/888	일명 밤 231-23-23101	(8806205001819)	201734		500	1,184,500	2,369	첨부파일	

- ※ 분기별 공급내역이 있음에도 공급업체가 보고를 하지 않아 종전 분기 가중평균가가 생성된 경우, 기존 공급내역에서 분기수정이 불가능하므로 '행추가'하여 새로 입력
- 기존 공급내역란은 해당 분기의 구입내역을 확인하여 공급신고 내역이 맞으면 「공급신고 맞음」, 공급신고 내역이 틀리면 「공급신고 착오」를 선택한 후 수정수량, 금액란에 실제 구입내역을 입력
- 행 추가하여 구입처, 구입수량 등 해당 분기의 구입내역을 모두 합하여 정확히 입력하고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

★ 著>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 청구	현황	C	력보기 ✓ 단가변경(최초구)	입)의약품의 공	급분기는 D(단기	H변경)으로 표시	됩니다.			
약품	₽ ⊆ 620500181	순번	1 요양개시일자	청구단가	공급분기	1치 가중평	군가	2차 가중평균가	3차 가중평균:	가
약품	약품명 페링가니트0.1%주사(니트로글 진료년월 2017-11 ~ 2018-01)_(10m 20180110	2,821	201724	2,36	9			
진료	년월 2017-11 ~ 2018	3-01				-				
◎ 공급	내역							행추기	행삭제	
						1	차 가중평균기	ŀ	요양기관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변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확인결과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자료첨부	
1	(ㅈ)시펴파	987-87-98765	페링가니트0.1%주사(니트로글	201724	10	50	1,184,500	2,369	공급신고맞음	•
	(7/868	301 01 30103	(8806205001826)	COTTEA					첨부파일	
2	(즈)신평판	987-87-98765	페링가니트0,1%주사(니트로글	201734	10				공급신고착오	•
2	17/000	351 01-30103	(8806205001826)	201734	.0	50	1,410,500	2,821	첨부파일	

3) 기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착오 청구한 경우 요양기관 확인 결과「기타」로 처리(전액조정)

⊘ 청구한	현황	01	력보기 🗸 단가변경(최초구입	』) 의약품의 공	급분기는 D(단)	가변경)으로 표	시됩니다.		
약품를	⊒ ⊆ 644903890	순번	3 요양개시일자	招	구단가	공급	분기		1차 가중평균가
약품등	약품명 콤비플렉스주		20171220	18	18 709		1524		18 186
진료님	료년월 2017-11 ~ 2018-01								
◎ 공급니	H역						1차 가중평균기	행추 -	가 행삭제
순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변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요양기관 확인결과
		0464	(1211)	271		수정수량	수정금맥	수정단가	자료첨부
1	(조)시펴파	100 10 10045	콤비플렉스주	201524	1	686	12,475,596	18,186	기타 🔻
· ·	(7/888	120-12-12045	(8806449038916)	201024					첨부파일

4) 단가변경(최초구입)

◆ 단가변경 및 최초구입에 대한 요양기관 확인기준 ◆

단가변경 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상태에서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최초구입 요양기관이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의약품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단가변경 및 최초구입 모두 거래내역서, 재고량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인정 시 최종 「단가변경」으로 처리
- ※ 단가변경(최초구입)은 분기 가중평균가가 생성되기 전까지 새로 구입한 단가를 즉시 적용하므로 요양기관이 구입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의약품 품목별로 입력하는 방법과 일괄 업로드의 두 가지 방법으로 입력 가능

(가) 의약품 품목별 입력

· 단가변경이 있는 경우 행 추가하여 구입처, 구입일자, 수량, 금액 입력 및 재고량 확인서
 등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접수메시지를 통해 의약품 구입 및 청구내역에 대한 특이사항 기재

0 단가	변 경						🗌 이전 단개	변경제출건 적용	를 단가변경신:	2내역조회 행	추가 행	삭제
순번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약품명	구입일자	적용규격	구입수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변경상한가	변경일	확인서류
1	단가변경	심평제약	123-12-12345	씨제이반코마이신염산염주1그람(수출명:	2019-01-05	1	10	100,000	10,000			첨부파일
1, 구위 2, 최:	입단가 = 구입금액/(구입 초구입약제는 단가변경:	십수량★적용규격)으로 과 동일하게 적용합니[계산되어집니다. 다.									
접수	M AI XI											

이전에 단가변경 한 의약품으로 단가변경 이후 변경내역이 없는 경우, '이전 단가변경
 제출건 적용'을 클릭하여 해당 의약품을 확인 후 적용(더블클릭)

				🗌 이전 단	단가변경제출건	적용 단가변경	신고내역조회	행추가	행삭제
번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변호	약품명	구입일자	적용규격	구입수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확인서류
단가변경신고내	역조회			x					×
◎ 약품코드	◎ 약품코드				ID 이전	용됩니다.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약품명			ok			
다기배경	심평제약	123-12-12345	팍셀주(파클리트	(셀)					

(나) 일괄 업로드 방식으로 입력

34

· 단가변경 의약품이 많아 건별로 입력하기가 어려운 경우 구입약가 확인 메인 메뉴에서
 · 단가변경 업로드서식 다운로드

- 단가변경에 해당하는 의약품별 구입처, 사업자번호, 구입일자 등 구입내역 입력 후 저장
- 저장된 파일을 단가변경 업로드 버튼을 통해 적용

아플 프트 전형구분 - 전체 - Q Să ····································	● 구입약가 확인목록 E ✓ 조회 후 서식받기를 미용해주세요. 단가변경업로도 E							단가 로드 단기	변경확인서식 I변경신고내역	단가변경업로드서식받기 다운로드 엑셀저장(전체)		
호권 약품코드 약품명 전쟁구분 전쟁구분 1 657306140 7년1억탈(7년1월르달).0.05mg/18) 처리 중 1 657306140 7년1억탈(7년1월르달).0.05mg/18) 11 1 11 7	약품코드	•	진행구분 - 전체 -	•						Q 조회		
dtl $qrade$ $qrade$ $qrade$ dtl 1 657306140 7HIPEEQ(7HII = 242).00.5mg/120) Xzl 3 Image: Solution of the set o										총 : 1건		
1 657306140 7HITELES(7HIE 23E)(0.5mg/LS) XZ S Image: Sector Control E7HE3564.xkx (g)7 (28) - 5xcel Image: Sector Control East (g)7 (28) - 5xcel East (g)7 (28) - 5xcel Image: Sector Control East (g)7 (28) - 5xcel East (g)7 (28) - 5xcel Image: Sector Control East (g)7 (28) - 5xcel East (g)7 (28) - 5xcel East (g)7 (28) - 5xcel Image: Sector Control <t< td=""><td>순변</td><td colspan="3">순변 약품코드</td><td colspan="5">약품명</td><td colspan="3">진행구분</td></t<>	순변	순변 약품코드			약품명					진행구분		
Image: DescriptionExample of the second	1	657306140		카버락틴정(카베르골린)_(0,5mg/1정)					처리 중			
····································	III 5 · ♂ · → 단가변경등록.xlxx [읽기 전용] - Excel											
$\begin{array}{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c $	파일 흘	삼입 페이지 레이아웃 =	수식 데이터 검토 보기									
클립보드 6 글플 1 만층 I I I D I / fs I I I J 1 약품코드 약품명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구입환 적용규격 구입수량 구입단경 구입단가 2 657306140 카버락틴정 (카베르프린)_(0.5mg/1정) 1 (주) XX제약 1234567890 2018010 1 10 100,000 [구입단가=구입금액/(구 입수량+적용규격)) 3 I I:단가변경 비조리 8자리 I I I I I 4 I I:단가변경 비조리 8자리 I I I I I I I 5 I I:단가변경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다. 불여넣기 · · · · · · · · · · · · · · · · · · ·	감라내기 특사 * 너식 복사 가 가 <u>가</u> * 표 * <i>출</i>	<u> • 11 •</u> 7 7 7 = = = 6	▷• <mark>라텍스</mark> 티팬 템병합	트 줄 바꿈 하고 가운데 맞출	텍스트	% ° €.0	 ▼ ● ●	표 셀	□ □		
D5 : X fx A B C D E F G H I J 1 약품코드 약품명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구입일자 적용규격 구입금액 구입단가 2 657306140 카버락틴경 1 (주) XX제약 1234567890 20180101 1 10 100,000 [구입단가 = 구입금액//구 입수량*적용규격)] 3 1:단가변경 반드시 반드시 10×11 8×12 (클립보드	. 5 글꼴	Gi I	맞춤		rs I	E시 형식	G.	스타일	셸		
A B C D E F G H I J 1 약품코드 약품명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구입일자 적용규리 구입수량 구입는 ? 구입단가=구입금액/(구 입수량=적용규리)) 2 657306140 카버락틴경 (카베르글릴린)_(0.5mg/12) 1 (주) XX재약 123456789 2018010 1 10 100,000 [구입단가=구입금액/(구 입수량=적용규리)) 3 -	DS \cdot : $\times \checkmark f_x$											
9품코드 약품명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구입문 적용규격 구입수량 구입구 주입구 주입구 주입구 주입구 주입구 주입는 구입단가=구입금액/(구 입수량*적용규격)) 3	A	В	С	D	E	F	G	н	I	L		
2 657306140 카버락틴정 (카베르골린)_(0.5mg/1정) 1 (주) XX제약 123456789 20180101 1 10 100,000 [구입단가 = 구입금액/(구 입수량*적용규격)] 3 1 1:단가변경 반드시 10자리 8자리 1 10 10,000 [구입단가 = 구입금액/(구 입수량*적용규격)] 4 *반드시 중복되는 ************************************	1 약품코.	드 약품명	단가변경구분	구입처	사업자번호	구입일자	적용규격	구입수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3 1:단가변경 반드시 10자리 8자리 4 **반드시 중복되는 항목없이 작실해주세요* 숫자만 조성 조성 5 **[구입단가=구입금액/(구 입수량·적용규격))으로 계 사되어 진니다 * (-,)삭제 (-,)삭제	2 6573061	40 카버락틴정 (카베르골린)_(0.5mg/1정)	1	(주) XX제약	1234567890	20180101	1	10	100,000	[구입단가 = 구입금액/(구 입수량*적용규격)]		
**반드시 중복되는 숫자만 숫자만 4 항목없이 작성해주세요* 작성 작성 *[구입단가=구입금액/(구 입수량=적용규격))으로 계 (-,.)삭제 (-,.)삭제 (-,.) 삭제	3		1:단가변경		반드시 10자리	반드시 8자리						
*[구입단가=구입금액/(구 입수량·적용규격))으로 계 사되어 진나다 *	4		※반드시 중복되는 항목없이 작성해주세요※		숫자만 작성	숫자만 작성						
	5		※[구입단가=구입금액/(구 입수량*적용규격)]으로 계 산되어 집니다.※		(-,.) 삭제	(-, .) 삭제						
	6											
	2											
(다) 단가변경 의약품 증빙자료 제출방법

- 구입약가 확인 메인화면의 단가변경확인서식을 클릭하여 단가변경확인서 또는 최초구입 확인서 다운로드
- 단가변경 또는 최초구입 확인서식에 맞추어 내용을 작성 후 저장
- · 단가변경 또는 최초구입이 발생한 최초 의약품에 단가변경 확인서 또는 최초구입 확인서와 기관장 확인문서(기관장 직인) 파일을 첨부하고 필요시 접수 메시지란에 내용 입력

⊙ 구입 의 ✓ 조회 최	약가 확인목 록 회서식받기를	(이용해주세요									단기	변경업로드	단가변경 확인 최초구입 확인 단가변경확인 단가변경신고	!서 !서 서식 '	단가변경업로드서 로드 엑셀저장	식받기 (전체)
약품코	<u> </u>				진	행구분 - 2	전체 -								٩	조회
(별첨5)																
							Ē	나가변경	경 확인	서						
○ 확인기 ○ 확인위																
	11-22					기존 재고			0		단기	바변경	m			
연번	약품코드	품명	환산규격	단위	기존 제고량	제고 소진일	반품일	거리계약일자	계약최초 입고일 (거리명세서상 구입일자)	구입수량	구입금액	구입단가	요양개시일자 (최초 사용일자)	구입쳐	사업자등록번호	<u> </u> 12
※ 참고 1. 동사 2. 동사 3. 요양	사항 1식은 기관 1식은 요양 기 기관이 작성	<mark>양 확인문서</mark> (관 상황에 · 제출한 내용	에 '별첨'서 맞게 변경 응만으로 딘	식으로 가능히 가변경	: 활용히 나나, 단: 병 의약	하고 대표의약 가변경 의약품 품임을 확인형	품에 첨 임을 증 말 수 없	부(문서는 요양 경하는 내용이 는 경우에는 기	양기관 자율 작성 포함되어야 함 거래명세서, 세 클) 금계산서 등	등 관련 증!	빙자료 별	도 요청 예정			

라. 추가확인 의약품 점검 및 확인방법

요양기관 확인 결과 「공급신고 착오」, 공급업체 2차 확인 결과 「공급신고 맞음」으로 확인하는 등 확인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 추가확인 통보대상

추가확인이 필요한 요양기관은 1차 확인내역 및 공급업체 2차 확인내역을 참고하여 확인 및 거래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추가확인 결과에 따라 심사평가원 담당자 검토 후, 최종 구입약가 확정

◎ 청구현황			이력보기	 ✓ 단가변경의약품의 ✓ 확정단가가 마스E 	공급분기는 단가변 단가(상한가)보다	[경(적용일자)로 표시됩 높은경우 마스터단가로	입니다. 2 반영되어 초록색바팅	으로 표시됩니다.			
약품코드	654100052	순번	1	요양개시일자	청구단가	공급분기	1차 가중평규가	2차 기준평규가	3차 가중평균가	확정단가	보입지 대부
약품명	씨잘액(레보세티리진염(산염)_(0,1g	/200mL)	20120805	39	201724	35	35	10021		MT .
진료년월	2017-08 ~ 2017-10			20110000	30	201124					
											2

0 공급내역(분기)

						1	차 가중평균기	ł	2	차가중평균기	ŀ				요양기관	공급업체
순번	구입쳐	사업자 등록변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최종 수량	최종금액	최종단가	확인결과	확인결과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자료첨부	자료첨부
1	심평	123-12-	씨잘액(레보세티리진염산염)	001704	200	26	182,000	35	26	182,000	35				공급신고착오	공급신고맞음
	상사	12345	(8806541000521)	201724	200	26	202,800	39							첨부파일	첨부파일

마. 요양기관 최종 제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구입약가 확인 및 점검이 끝난 경우 최종 제출

- 구입약가 확인 메인 메뉴에서 확인이 끝난 차수 선택하고 하단의 「최종 제출」 버튼을 통해 최종 제출 완료
- 요양기관 담당자 정보 입력(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 제출을 완료하면 진행구분이 '작성중'에서 '제출완료'로 변경되며 요양기관은 내용 수정 불가

 - 단, 접수마감 이전에 수정내역이 발생한 경우는 심사평가원에 접수 취소 요청을 하면 접수취소 가능

▲ 홈>	진료비청구 > 기·화이혀화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기	바 확인								즐겨찾 .	기 추가 🛛 출	역 팝업	점검요청 도움말 머뉴얼 다운로트	
V TUN	0 4 2 2 8	礼人	미사프모스	71417	н	1111110		2 귀 든 님 이	저스미가이	* JLE H OI	CACATI	0.21-11	הור וכו ה	πł.	지근녀의	
	21	-44 -	내성품축구	신영구	분	1/1/5/22	2	2사공도걸	입구마점될 00100517	수가공보철	93V	언덕세		인 10 · · ·	신묘년질	
	2018	ž		488		20100430			20100517				2010051	10 2	017-11 ~ 2018-01	
0 구입의	가 화이목로												C	가벼경화이서신	다가벼경업로드세신	반기
· 조히 흐	서식받기를 [1용해주세요										타가병	경업로드 드	파가변경신고내역다	우로드 엑셀저장(전	(태)
													00 0			
약품코	•			진행구분	- 전체 -	•									Q 2	٤Ì
						1										
							담당자정보	보입력							**	응 1건
순번		믹	품코드				• 담당자	김심평	• 전화변호	033 - 333 - 4	444				진행구분	
1		65	7306140				·팬스버호	070 - 123 - 4	567 · 호대제하	010 - 1234 - 4	444				작성중	
							1-6-	010 123 4							_	_
										Ⅴ 확인	X 닫기				최종제출	

바. 의약품별 최종 처리결과

1) 처리유형

유형	내용
요양기관 착오	업체별 공급보고 내역이 모두 맞는 경우
공급신고 착오	업체별 공급보고 내역 중 하나 이상 공급보고 착오건이 발생한 경우
단가변경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을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로 단가변경 인정, 착오, 불인정으로 처리 최초구입도 단가변경으로 처리
미확인	요양기관과 공급업체 모두 확인하지 않은 경우

- 2) 의약품별 처리결과 확인
- 요양기관은 구입약가 확인목록의 처리결과를 통하여 의약품별 처리결과 확인
- 일치 여부는 청구단가와 확정단가를 비교한 결과로 동일한 경우는 일치, 상이한 경우는 불일치로 생성

1도 20	118 👻	› 차수	1 •									Q 2
입약가 🕯	확민현황											메뉴얼 다운
	연도	차수	대상품목수	진행구분	1차통보일	2차통보일	접수마감일	추가통보일	담당자	연락처	처리기한	진료년월
	2018	1	6	처리완료	20180125		20180209				20180205	2017-08 ~ 201
입약가 ?	확인목록											
회 후 서식 품코드	₩받기를 이용	해주세요.	> 처리결과	-전체 - 🗸	> 일치며부	- 전체 - 👻		단	까변경업로드	단가변경 단가변경	확인서식 [관가면경업로드셔스 로드 엑셀저장() 옥 3
회 후 서식 품코드	₩받기를 이용	해주세요.	> 처리결과	- 전체 - 🔹 🗸	›일치여부	- 전체 - 👻		단	가변경업로드	단가변경 단가변경	확인서식 [2가면영업로드셔스 로드 엑셀저장() 오크
회 후 서식 뚴코드 순변	의받기를 이용 ▼ ┃ 약품표	:해주세요, 9드	→ 처리결과	- 전체 - 🗸	→ 일치며부 • 약품명	- 전체 - 👻		Đ	까변경업로드	단가변경 단가변경 처리결과	확인서식 단 신고내역다운희	2가면경업로드셔스 로드 엑셀저장() 오크 행치여부
ii 후 서 ² 동코드 순변 1	의받기를 이용 ▼ 약품도 641601	해주세요. 1 모드 1281	› 처리결과 목시	- 전체 -	> 일치여부 · · 약품명 ((아목시실린수회	- 전체 - ↓ 물·회석클라불린	·산칼륨)_(50mL)	단	가변경업로드	단가변경 단가변경 처리결과 단가변경	확인서식 전	2가면경입로드셔스 로드 엑셀저장() 오 2 일치여부 일치
회 후 서 북코드 순번 1 2	의받기를 이용 ▼ ● 약품도 641601 642101	해주세요. 9도 10 1281 1591	→ 처리결과 목시	- 전체 - ▼ 글시법 156,25mg/5m 유한세파클러건조시	> 일치며부 · · 약품명 I(마목시실린수회 답(수출용:유클린	- 전체 - ▼ 물·희석클라불린 1건조시럽)_(3,7	·산칼륨)_(50mL) 5g/150mL)	Đ	까변경업로드	단가변경 단가변경 처리결과 단가변경 공급신고착	확인서식 전 경신고내역다운데 오	2가면상업로드셔스 로드 역설자장() 영치여부 일치 불일치
비 후 서식 동코드 1 2 3	의받기를 이용 ▼	8월 주세요. 1281 15591 - 1 13804 - 1	→ 처리결과 목시	- 전체 - ▼ 글시업 156, 25mg/5m 유한세파클러건조시 맥시부렌시	> 일치며부 · 약품명 I(아목시실린수회 법(수출용:유클건 럽(덱시부프로펜)	- 전체 - ↓ 물·회석클라볼린 건조시립)_(3.7)_(6g/500mL)	<mark>:산칼륨)_(50mL)</mark> 5g/150mL)		까변경업로드	단가변경 단가변경 처리결과 단가변경 공급신고착 공급신고착	확인서식 단 경신고내역다운희 우 오 ·오	2/판광합로드셔스 로드 액셀저장() 영치여부 양치여부 당치 당치
비 후 서식 동코드 2 3 4	부받기를 이용	ti 주세요. 9도 2 1281	→ 처리결과 목시 목시 가소콜액(시메치콘)(;	- 전체 - 글시립156,25mg/5m 유한세파클러컨조시 맥시부렌시 군납용:시메치콘현탁약	> 일치여부 약품명 ((아목시실린수회) (럽(수출용:유클린 럽(덱시부프로펜) 백500일리리터Sim	- 전체 - ↓ 물·회석클라불린 1건조시립)_(3,7)_(6g/500mL) hethiconeOralS	<mark>산칼륨)_(50mL)</mark> 5g/150mL) uspension500ml)_(0,2g/10mL	가변경업로드	단가변경 단가변경 차리결과 단가변경 공급신고착 공급신고착 요양기관칙	확인서식 단 경신고내역다운희 오 오 오 오 오	2/판광감로드셔츠 목도 역설자장() 양치여부 양치 동일치 일치 동일치
회 후 서식 품코드 2 3 4 5	ドビフラ 0.9 ・ ・ ・ ・ ・ ・ ・ ・ ・ ・ ・ ・ ・ ・ ・ ・ ・ ・ ・	8월주세요. 28도 1281 1591 1804 1931	→ 처리결과 목시 목시 가소콜액(시메치콘)(;	- 전체 - - 전체 - - 전체 -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전체 	 > 일치여부 약품명 ((아목시실린수회) (립(수출용:유클린 럽(덱시부프로펜)) 백500일리리타Sim 티렌푸마르산영). 	- 전체 - ▼ 물·회석클라볼린 [건조시럽]_(3, 7)_(6g/500mL) nethiconeOralS (27,6mg/100ml	<mark>산칼륨)_(50mL)</mark> 5g/150mL) uspension500ml _)))_(0.2g/10mL	가변경업로드	단가변경 단가변경 차리결과 단가변경 공급신고착 용급신고착 요양기관척 단가변경	확인서식 5 정신고내역다운르 우 오 ·오 ·오 ·오	2/판광감로드셔츠 목도 역설자장() 양치여부 양치 분양치 양치 분양치 양치

3) 유형별 상세처리내역

가) 요양기관 착오

- 업체별 공급내역에 대해 요양기관 확인 결과, 모두 「공급신고 맞음」 처리 건으로 최종
 「요양기관 착오」로 처리
- 공급내역보고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최종 구입약가 확정

★ 홈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

즐겨찾기 추가 🛛 출력 🛛 팝업 🗋 점검요청 🗌 도움말

◎ 청구현황			이력보기	 ✓ 단가변경의약품의 공급분기 ✓ 확정단가가 마스터단가(상) 	I는 단가변경(적용일자)로 한가)보다 높은경우 마스터	표시됩니다. [단가로 반영되어 초록색]	바탕으로 표시됩니다.	E.IX.			
약품코드	641601281	순번	1	요양개시일자	청구단가	공급분기	1차 가중평균가	2차 가중평균가	3차 가중평균가	확정단가	불일치 여부
약품명	목시클시럽156,25m	ng/5ml(아목시실	린수화물	20170805	55	201724	51	10021	51	51	불입치
진료년월	2017-08 ~ 2017-10						01				

◎ 공급내역(분기)

							1차가중평균기	ł	;	2차가중평균기	ł				요양기관	공급업체	
순번	구입쳐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최종 수량	최종금액	최종단가	확인결과	확인결과	처리결과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자료첨부	자료첨부	
1	심평	123-12-	목시클시럽156,25mg/5ml(아목	201724	សា	1,370	3,493,500	51				1 370	2 402 500	51	공급신고맞음	공급업체미확인	고그시귀마의
	상사	12345	(88064160128157)	201124	30							I,JIU	3,483,500	J	첨부파일	첨부파일	295749

◎ 구입약가 확인목록

단가변경확인서식 단가변경업로드써식받기 단가변경업로드 단가변경신고내역다운로드 엑셀저장(전체)

조회 후 서식받기를 이용해주세요.

약품코드 ▼ → 처리결과 -전체 - ▼ → 일치여부 -전체 - ▼

Q 조회 총 : 6건

순번	약품코드	약품명	対리결과	일치여부
1	641601281	목시클시럽 156,25mg/5ml(아목시실린수화물·희석클라불란산칼륨)_(50mL)	요양기관착오	불일치
2	642101591	유한세파클러건조시럽(수출용:유클러건조시럽)_(3,75g/150mL)	공급신고착오	불일치
3	643500804	맥시부펜시럽(덱시부프로펜)_(6g/500mL)	공급신고착오	일치
4	650100021	가소콜액(시메치콘)(군납용:시메치콘헌탁액500밀리리터SimethiconeOralSuspension500ml)_(0,2g/10mL)	요양기관착오	불일치
5	653600931	자티엔시럽(케토티퀜푸마르산염)(27.6mg/100mL)	단가변경	일치
6	654100052	씨잘액(레보세티리진염산염)(0.1g/200mL)	요양기관착오	불일치

나) 공급신고 착오

- 요양기관 청구단가가 맞고 공급보고 내역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이므로 최종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
- 요양기관 수정단가 기준으로 최종 구입약가 확정

♠ 홈 0 청금	> 진료비 !현황	청구 〉 의의	'뿜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획 이릭	(인 역보기	✓ 단가	변경의약품의 단가가 마스!	니 공급분기는 단 러단가(상한가)	안가변경(적용을 보다 높은경우	일자)로 표시됩 마스터단가로	입니다. 일 반영되어 초록	ң색바탕으로 I	티시됩니다	ł.	즐겨찾기	추가 🛛 출력	립	점검요청	등 도움말
약큼	j⊒⊆	6416012	81 순변	1		요양개시일:	<u>۵</u>	청구단가		공급분기	걔경	1차 5평균가	2 가중!	차 병균가	3차 가중평균기	확정단	! ? }	불일치 며부
약큼	9	목시클,	시럽156,25mg/5ml(아목사실린수회	화물		20170805		55		201724		51		5	55	55		일치
진호	년월	2017-08	3 ~ 2017-10							201121		01						EA
0 공급	내역(분	7)																
							1차가중평균2	ł		2차가중평균7	ł				요양기관	- ਤ	금업체	
순변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최종 수량	최종금액	최종단가	확인결고	확	인결과	처리결과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자료첨부		료첨부	1
1		789-89-	목시클시럽156,25mg/5ml(아목	201724	50	1,370	3,493,500	51	1,370	3,767,500	55	1 270	2 767 500	CC	공급신고착.	오 공급;	신고착오	고그시고차이
	398	78989	(88064160128177)	201724	00	1,370	3,767,500	55				- 1,3r0	a, ror, auu	00	첨부파일	쳠	부파일	1985741
0 79	입약가 획	인목록													단개	변경확인서식	단가변경	겁로드서식받기
✓ 조호	후 서식	받기를 이용	k해주세요.											단가변경업	로드 단가	변경신고내역다왕	음로드	넥셀저장(전체)
약큼	ΞΞ	•	→ 처리결과 -	전체 -	•	> 일치아	부 - 전체	- •										৭ 조회
																		Š : 6
i	논변		약품코드						약품명						처리달	1 2 1	Q	」치여부
	1		641601281				목시클시럽156	,25mg/5ml(0)	목시실린수회	물·희석클라불림	란산칼륨)_(50i	mL)			공급신고	1착오		일치
	2		642101591				유한세파	클러건조시럽(수출용:유클리	i건조시럽)_(3,	75g/150mL)				공급신고	1착오		불일치
	3		643500804					맥시부펜시립	법(덱시부프로	펜)_(6g/500ml	.)				공급신고	1착오		일치
	4		650100021		가스	산콜액(시메치	[콘)(군납용:시	메치콘현탁액5	600밀리리터Si	methiconeOra	ISuspension5	00ml)_(0	(.2g/10mL)		요양기콘	!착오		불일치
	5		653600931				λH	그텐시럽(케토I	티펜푸마르산	염)_(27,6mg/1	00mL)				단가변	13		일치
	6		654100052					씨잘액(레보k	비티리진염산업	ä)_(0,1g/200m	L)				요양기콘	·착오		불일치

다) 단가변경

- 증빙자료 확인 결과, 단가변경으로 인정 된 경우
 - 구입일자, 구입수량 등에 착오가 발생하여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된 경우도 최종
 「단가변경」으로 처리
 - 단가변경 불인정의 경우는 최종 요양기관 착오 또는 공급신고 착오로 처리
- 단가변경일 이후 요양개시일부터 단가변경이 적용됨

客	> 진료비	청구 > 의역	·[품관리 > 구입으	약가 > 구입약가 획	빈										즐겨찾기	추가	출력	팝업	점검요	청 🛛 도움말
청구	현황			019	벽보기	 ✓ 단가변 ✓ 확정단 	경의약품의 등 '가가 마스터면	응급분기는 단. 단가(상한가)보	가변경(적용일 !다 <u>높은경우</u>	자)로 표시됩! 마스터단가로	니다. <u>반영</u> 되어 초록	색바탕으로 :	E시됩니	Ъ.						
약큼	물로드	6416013	281	순변	1	89	개시일자	청구단7	F .	공급분기	,	1차 1중평균가		2차 가중평	771	가중	3차 평균가	확정	단가	불일치 며부
약큼	58	목시클.	시럽 156,25mg/5r	ml(아목시실린수회	화물	20	170805	55	단개	변경(20170804	.)				_					일치
진료	년월	2017-0	8 ~ 2017-10								·									
공급	내역(분	71)																		
								l차 가중평균	ጉ	;	2차가중평균기	ŀ				88	기관	공	금업체	
) 번	구입처	사업자 등록변호	약 (표권	품명 둔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최종 수량	최종금액	최종단가	확인	결과	확	민결과	처리결과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자료	침부	자	료첨부	
1	시며파	456-45-	목시클시럽156	25mg/5ml(아목	201724	EO	1,370	3,493,500	51				1 270	2 402 500	FI	공급신	고맞음	공급입	체미확인	고고시그며
	898	45678	(880641)	60128188)	201724	50							1,310	3,433,300	31	첨부	파일	쳠	부파일	승급전꼬릿
단7	변경																	0	전 단가변	경제출건 적용
н		н	그미귀		0170			THE	구입일자	구입수량	구입금액	HOT	7	입단가	비개 제사하니기	HI 71.0	1 *1	0,115		ורוכור
:면	인가면접	572	404		약품명		ALE	사연오	수정일자	수정수량	수정금액	484	۹ 4	정단가	변경영인가	면경험	i 4	인세뉴	A	디길과
1	단가변	13	심평제약	목시클시럽156.3	25mg/5m	(아목시실린	수 123-	12-12345	20170804	162	445,500	- 50		55			첞	보파임	단가	벼경인정
71	입약가 획	인목록															단가변경	확인서식	단가변경	영업로드서식받
조호	후 서식	받기를 이용	용해주세요.												단가변경업	걸로드	단가변경	신고내역티	운로드	엑셀저장(전쳐
약품	코드	•		⇒ 처리결과 -	• 전체 -	•	> 일치여부	- 전체 -	•											৭ হুই
																				ā.
			01	F													ורוכורוב			0.2014
1	순민		약품고:				0.13	URATE OF		약품명	פוווראורפי	=) (50-1)					서디걸봐		_	일시대부
	2		6416012	01			독시글/	사님 155,25Mg	/omil(마족시설 조미란(스츠의	·····································	H클다클단산길	큠/_(50mL)					ビ가변경 フルコーン	2		일지 보이 1
	2		CV3E000	101 104			π	·전세파물이건 매 II	고시립(구절8 브페티러/데티	·규클디킨오/ (비표군페)/의	vier/1(a, ray/ 1 a /500ml)	JUNIL)				5	'급연보석'	L 0		르르시 이귀
	4		6501000	121		기사콘애/	비미취코가그	·/·· 토닷데네·요·	위타애리(리) 이미	IPIEI Simethia		ancion500m	I) (0.2a7	10ml)		t o	· 미인고역:	- 0		분인회
	7		0001000			175-0	vel/VE/(신신)	10 MUNC	L-1-1-0002L		sone or arous p	onaronadom	-/o/r9/	rolle/		<u>م</u>	6/129-	<u>.</u>		

라) 미확인

요양기관과 공급업체 모두 구입약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 최종 「미확인」으로 처리
 공급 가중평균가(1차) 기준으로 최종 구입약가 확정

各名	> 진료비	청구 > 의의	ř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최	빈										즐겨찾기	추가 출력	[] 팝업 [] 점겸!	3청 도움말
) 청구	현황		01	력보기	✓ 단가변✓ 확정단	경의약품의 공 '가가 마스터딘		I변경(적용일 다 높은경우 [자)로 표시됩니 과스터단가로	니다. 반영되어 초록	색바탕으로 3	E시됩니(<u>}</u> ,				
약큼	æ	6416012	81 순변	1	ß	양개시일자		청구단가		공급분기	717	1차 5평균가	712	2차 동평균가	3차 가중평균가	확정단가	불일치 여부
약	8	목시클/	시럽156,25mg/5ml(아목시실린수:	화물		20170805		55		201724		51			51	51	불일치
진형	년월	2017-08	3 ~ 2017-10								2.5						
) 공급	내역(분	71)															
						1	차 가중평균:	<u>ት</u>	;	2차가중평균기	ŀ				요양기관	공급업체	
순변	구입처	사업자 등록번호	약품명 (표준코드)	구입 분기	적용규격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공급수량	공급금액	공급단가	최종 수량	최종금액	최종단가	확인결과	확인결과	처리결고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수정수량	수정금액	수정단가				자료첨부	자료첨부	
1	시며파	123-12-	목시클시럽156,25mg/5ml(아목	201724	50	1,370	3,493,500	51				1 370	3 103 500	51	요양기관미확인	인 공급업체미획	인 8약기과최
	000	12345	(88064160128188)	201124	30							I,JIU	3,433,300	JI	첨부파일	첨부파일	46/12 4
) 78	약가 획	인목록													단가변;	경확인서식 단가빈	경업로드서식받
조호	후 서식	받기를 이용	해주세요.											단가변경업	입로드 단가변	경신고내역다운로드	엑셀저장(전차
약품	₽⊆	•	> 처리결과 -	전체 -	•	> 일치여부	- 전체 - ㆍ	,									৭ 조ই
																	*80 ;
1	변		약품코드						약품명						처리결	과	일치며부
	1		641601281				목시클시럽1	56,25mg/5m	I(아목시실린:	수화물·희석클레	<u></u>]불란산칼륨;	L.(50mL))		요양기관	착오	불일치
	2		642101591				유한세	파클러건조시	럽(수출용:유	클러건조시럽)	_(3,75g/150r	nL)			공급신고	착오	불일치
	3		643500804					맥시부펜시	럽(멕시부프로	2펜)_(6g/500n	nL)				공급신고	착오	일치
	4		650100021		가소콜'	액(시메치콘)(군납용:시메치	콘현탁액500	밀리리터Sime	thiconeOralS	uspension50	0ml)_(0,	2g/10mL)		요양기관	착오	불일치
	5		653600931					자티텐시럽(커	토티펜푸마릐	르산염)_(27,6m	ig/100mL)				단가변	3	일치

사. 구입약가 최종 확정

- 1) 구입약가 최종 확정 안내
- 요양기관 웹메일
- 요양기관업무포털 안내 배너(링크) 제공
-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팝업 통보
- 문자서비스 등록기관은 SMS 통보 병행
 ※ 의약품별 세부 확정내역은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을 통해 확인

요양기관 업무포털 안내 배너



- 2) 구입약가 확인 및 확정 안내 SMS 신청
- 가) 신청방법
 -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 및 확정 안내를 위한 SMS 신청
 - 요양기관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SMS신청으로 접속
 - 담당자 기본 정보 입력
 - 「구입약가 확인」그룹의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인 및 확정안내 선택 후 등록

진료비청구	< SMS신:	a ×		Ę	6								
Diagnosis Amount Demand	♠ 홈 > 진료비	청구 > 청구 및 통보관련 신	청 > SMS신청 즐겨찾기 추가 출력 팝업	점검요청 도움말									
◎ 진행과정	⊙ 담당자 정보	2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이름		직위 휴대 전화번호		1								
● 전산형구 신형 ● SMS신청 ● 도부서메일신청	◎ 문자서비스(SMS) 신형 및 변경												
◎ 대행청구기관 통보		구분	서비스 항목	선택	^								
환자평가표접수			응급대불접수안내										
◎ 청구오류		오그대부어다	보완요청안내										
조산원 청구 및 조회		564267	구분산정요청안내										
⊙ 최국권 관리 ⊙ 치료재료관리			지급안내										
 요양기관영상자료제출 	M	101011010	요양기관구입약가 확인안내										
◎ 원격협진 시범사업관련 자료제출		구입극가적인	요양기관 구입약가 확정안내										
의료취약지 간호사 인컨비 직 접지원 시범사업		처그경차토비	청구경향 웹메일통보 안내										
		STSSET	자율시정통보 안내										
		허피즈사 허자비고	(일일보고) 등록 시 문자 메시지 전송										
		24114 28112	(최종보고) 등록시 문자발송		8								
		편기교려아비어	고혈압 평가결과 안내										
		872220017	당뇨병 평가결과 안내		Π.								
		요양기관지원	원격지원 예약시간 변경 안내										
		시인근기수 견제 /조제	결정신청접수완료										
		294/12 20/20	결정신청심의완료		~								
				등록 목록									

나) 문자 서비스 내용

구분	내용
구입약가 확인안내	OO년 O분기 공급내역,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 기간입니다. 요양기관 업무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 확인에 접속하시어 확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약가 확정안내	OO년 O분기 공급내역, 요양기관 구입약가가 확정되었습니다. 요양기관 업무 포털/진료비청구/의약품관리/구입약가 확인에서 확정된 구입약가를 확인하십시오.



Ⅳ. 구입약가 정산 및 이의신청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가이드



47



1. 구입약가 정산

- 가. 정산심사 개요
- 1) 개념
- 구입약가 확인결과, 요양기관이 착오청구한 약품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정산(환수)하는 업무
- 2) 대상
- 구입약가 확인결과, 청구단가와 최종 확정단가가 일치하지 않는 의약품
 - 요양기관 청구단가가 확정단가보다 높은 경우 및 요양기관의 구입내역이
 없는데 청구가 발생한 경우(약품코드 착오 청구) 등 해당
 - * 확정단가가 요양기관 청구단가보다 높은 경우는 정산되지 않으며 확정단가와 청구단가 차액분에 대하여 추가청구 가능함
- 3) 정산코드
- 구입약가 청구착오로 인한 단가조정이므로 "A코드(금액산정착오 조정코드)"로 정산됨
- 4) 시기 및 기간
- 구입약가 확정 통보 및 안내 후 실시하며 약 한달 정도 소요
- 5) 결과 통보
- EDI 통하여 정산심사결과 통보
 - 정산심사결정서: 요양기관 접수번호별 총 정산금액, 명세서별 정산금액
 -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 접수번호, 명일련, 약품코드별 정산금액

나.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정산심사 대상 확인

- 1) 확인 시기
- 구입약가 확정 통보 및 안내에 따라 구입약가 최종 확정결과 확인
 - * 구입약가 확정 통보 및 안내: 웹메일, SMS(신청기관), 요양기관 업무포털 배너 및 구입약가 검증시스템 팝업
- 2) 확인 방법
- 요양기관업무포털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으로 접속하여 구입약가 확인 차수 및 의약품별 처리결과, 청구단가, 확정단가 등 확인
 -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확정단가가 '불일치'인 의약품이 정산심사 대상에 해당
 - 해당 의약품이 청구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청구단가와 확정단가 차액에서 일투, 총투를 반영한 금액이 최종 정산됨

	HIR/	요양7 건강보역	 관업 험심사품	무포털 평가원				통합검색	•			٩	검색				★ 즐겨형	171 🔳	사이트립	심사: 종합,	기준 서비스 →
				업무안내		의료기	준관리	진료비	청구 정	산관리	모니터림	시 자동	차보험	정보	코화지원	청구	소프트웨(에 검사 :	인증		
2	- - - - - - - - - - - - - - - - - - -	! 	<	구입약가 입	겁무안니	l x	구입약가	확민 x													
Diagno	sis Amoun	t Demand		♠ 홈 > 진료:	비청구 >	의약품	완리 > 구입의	f가 > 구입의	다 확인								즐겨찾기 추	가 [출	력 [팝업 점	김요청 🛛 도움말
9행과정 8 기 미	EH712	1.21		→ 연도 20	18	Ŧ	> 차수 1		•												Q 조회
5구 곳 반자평기	·표접수	28		⊙ 구입약가 최	확민현홍	ł															에뉴얼 다운로드
청구오류 조산원 청	병구 및 조회	2			연도	:	차수	H상품목수	진행구분	1ž	타통보일	2치	통보일		접수마감	일	추가통보일	담당자	면락처	처리기한	진료년월
의약품괸	а				2018		1	28	처리완료	20	0180125				2018020	9				20180205	2017-08 ~ 2017-10
) (⁰ 청	구현황 품코드	641900161		순번	이력	보기	 ✓ 단가면 ✓ 확정단 ▲ 양개시 	경의약품의 : 가가 마스터! 일자 청구	응급분기를 받가 단가(상한가)보다 구단가 공급분	면경(적용일/) 높은경우 미 기	아도 표시됩니 나스터단가로 (1차 가중평균가	I다. 반영되어 초록4	네바탕으로 표 2차 가중평균:	시됩니 가	Cł.	3차 가중평균2	4	확정단가	ž (일치 1부	
- 약	품명	네오플라틴주	5밀리리	리터(카보플라틴)			20171011		00 201724		5,500 5,550			5,550			5,550	불	일치	에세지지자 전원	
- 8 공	료년월 급내역(분)	2017-08~20 (1)	17-10																		Q 조 ই
ł	7014	사업자		양품명		구입	8033		1차 가중평균기	4		2차가중평균기	4	최종			요양 확인	기관 결과	공	급업체 인결과	à : 2
4 운변 3	순변 구입처 등록변호			(표준코드)		분기	역용규역	공급수량 수정수량	공급금액 수정금액	공급난가 수정단가	공급수량 수정수량	공급금백 수정금액	공급난가 수정단가	수량	쇠쯩금백	쇠쫑난가	자료	첨부	74	료첨부	일치여부 불일치
a 1		100.10.10015	네오클	라틴주(카보클	들라틴)	201724	1	580	3,190,000	5,500	570	3, 163, 500	5,550	570	2 102 000	F 550	공급신	고착오	공급	신고착오	일치
	심평제역	123-12-12345	(8806419001612	2)	201724		570	3 163 500	5 550				010	5, 103,500	5,550	처브	71.01	24	H1101	일치

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한 정산심사 결과 확인

- 요양기관업무포털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재심사/환수/정산) 등
 정산 결과로 접속
- 보험자별, 정산년월일, 정산차수별 정산내역 확인

0	미역산형(제심사/환수/정산)등 정산 클궑(전선통보기관용) ×																				
A 3	좋 > 정신	관리 > 재심	/미의신청/	환수/정산 > 이	의신청(재심	님사/환수/	'정산)등 정산 및	결과(전산통보기관	간용)								Kini	계찾기 추가 🛛	출력	팝업 점겸	요청 도움말
0	건강보험	법 〇 의료	ad O	보훈위탁		EDI															
, 3	it업구분	정산	심사 내역서			정산구분	전체	•	,	접수변호											
. 7	1원	본원	Ŧ		» i	덩산년 월	2019-02 🛟		>	정산차수	91 👻	~ 94 👻									
. 3	성산심사	코드 전체							>	명일련		~									Q 조회
* 019	1신청 :	정산통보일자)로부터 90일	빌 이내에 심판행	병구 접수 기	!능 ★제2	식사조정청구 :	정산통보일자로특	루터 90일	OILHOU O	의신청 접=	순 가능									
0 점	·미니같은 · 응민홍보들사포구터 것들 이내에 남근당구 남구 가장 · *세금사조양경구 · 응인홍포들사포구터 것들 이내에 미리간은 남구 가장 9. 정사석사목록 총 : 2994건 : 역설규장																				
순	1 지원	정산구분	정산차수	정산통보일자	접수변호	청일련	정산연변	정산심사코드	정일련	명일련	진료형태	사업자기호	증변호	수진지	ŀ 가입⊼	환수/환급	상병기호	요양개시일자	소계ㅣ	소계 ॥	정산심결 가강액
1	본원	이의신청	20190291	2019-02-08		3	2017035477	D1			1					환급	Q161	2017-05-01	1,372,331	1,468,430	583.340
2	본원	이의신청	20190291	0010 00 00																	
3				2019-02-08		2	2017035509	D1			1					환급	C310	2017-04-22	6,837,811	5,974,050	29,810
	본원	미의신청	20190291	2019-02-08		2	2017035509 2017035509	D1 03			1					환급 환급	C310 C080	2017-04-22 2017-05-23	6,837,811 1,597,964	5,974,050 1,603,660	29,810
4	본원 본원	이의신청 이의신청	20190291 20190291	2019-02-08 2019-02-08 2019-02-08		2 2 1	2017035509 2017035509 2018013534	D1 03 05			1 1 2					환급 환급 환급	C310 C080 M8580	2017-04-22 2017-05-23 2018-09-05	6,837,811 1,597,964 264,124	5,974,050 1,603,660 2,300	29,810 147,420 96,280
4	본원 본원 본원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 2 1	2017035509 2017035509 2018013534 2019000630	D1 03 05 05			1 1 2 1					환급 환급 환급 환급	C310 C080 M8580 C029	2017-04-22 2017-05-23 2018-09-05 2018-07-17	6,837,811 1,597,964 264,124 252,090	5,974,050 1,603,660 2,300 259,320	29,810 147,420 96,280 156,620
4 5 6	본원 본원 본원 본원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 2 1 1 1	2017035509 2017035509 2018013534 2019000630 2019000045	D1 03 05 05 88			1 1 2 1 2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C310 C080 M8580 C029 S018	2017-04-22 2017-05-23 2018-09-05 2018-07-17 2018-11-18	6,837,811 1,597,964 264,124 252,090 130,522	5,974,050 1,603,660 2,300 259,320 41,560	29,810 147,420 96,280 156,620 14,100
4 5 6 7	본원 본원 본원 본원 본원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 2 1 1 1 1 1	2017035509 2017035509 2018013534 2019000630 2019000045 2019000045	D1 03 05 05 88 88			1 1 2 1 2 2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C310 C080 M8580 C029 S018 S018	2017-04-22 2017-05-23 2018-09-05 2018-07-17 2018-11-18 2018-11-01	6,837,811 1,597,964 264,124 252,090 130,522 140,600	5,974,050 1,603,660 2,300 259,320 41,560 163,970	29,810 147,420 96,280 156,620 14,100 17,020
4 5 6 7 8	본원 본원 본원 본원 본원 본원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 2 1 1 1 1 1 1	2017035509 2017035509 2018013534 2019000630 2019000045 2019000045 2019000045	D1 03 05 05 88 88 88 88			1 2 1 2 2 2 2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C310 C080 M8580 C029 S018 S018 S018	2017-04-22 2017-05-23 2018-09-05 2018-07-17 2018-11-18 2018-11-01 2018-11-22	6,837,811 1,597,964 264,124 252,090 130,522 140,600 68,963	5,974,050 1,603,660 2,300 259,320 41,560 163,970 40,650	29,810 147,420 96,280 156,620 14,100 17,020 14,110
4 5 6 7 8 9	본원 본원 본원 본원 본원 본원 본원 본원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91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019-02-08		2 2 1 1 1 1 1 1 1 1	2017035509 2017035509 2018013534 2019000630 2019000045 2019000045 2019000045	D1 03 05 05 88 88 88 88 88 88			1 1 2 1 2 2 2 2 2 2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환급	C310 C080 M8580 C029 S018 S018 S018 S018	2017-04-22 2017-05-23 2018-09-05 2018-07-17 2018-11-18 2018-11-01 2018-11-02 2018-11-02	6,837,811 1,597,964 264,124 252,090 130,522 140,600 68,863 129,216	5,974,050 1,603,660 2,300 259,320 41,560 163,970 40,650 58,600	29,810 147,420 96,280 156,620 14,100 17,020 14,110 11,400

2. 구입약가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개요

- 1) 개념
-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로서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구입약가
 정산심사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및 의료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 등)

2) 대상

○ 구입약가 조정분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을 대상으로 함

-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확인 시, 분기 가중평균가 및 공급내역을 착오 확인하였거나
 단가변경(최초구입) 의약품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해당
 - * 이의신청 제외 대상: 추가 청구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경우, 이의신청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
- 3) 신청 방법
- 서면 또는 웹 이의신청 가능하며 서면 청구 시, 해당 요양기관 관할 본·지원(본원 의약품정보조사부, 지원 고객지원부)으로 접수
 - * 관련 서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 서식]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요양급여비용 심사 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은 정산심사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서」를 제출
- 4) 결과 확인
- EDI를 통하여 요양기관에 이의신청결과 통보

나. 이의신청 첨부서류

- 해당 진료월에 적용된 청구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거래내역서 사본(계약일자, 계약 약품명, 계약단가 등 포함)
 - 의약품구입에 관한 서류(재고량 확인서 등 구입 및 재고현황 관련 서류)
 - 거래명세서 및 세금 계산서
- 기타 구입약가 산정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1) 요양기관이 구입약가 확인을 잘못하여 청구단가가 조정된 경우
- 요양기관의 청구단가가 맞는 경우로 구입약가 확인 시 요양기관 담당자가
 분기 가중평균가 및 공급내역을 잘못 확인하여 조정된 사례임
 - · 진료기록지 및 요양기관 청구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거래내역서 사본,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분기 가중평균가 및 상세내역 첨부

- 2) 단가변경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단가변경(최초구입) 의약품이나 요양기관이 단가변경 확인을 누락한 경우로
 진료기록지 및 재고량 확인서, 의약품수불대장, 거래명세서 등 단가변경 의약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3)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변경일을 기재하지 않아 조정된 경우
- 장기투약으로 인해 가중평균가가 달라진 경우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줄번호를 달리하여 변경일자란에 변경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하나 기재누락으로 정산된 사례임
 - 투약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 등 증빙자료 첨부

다. 웹 이의신청방법

- 웹 이의신청은 서면 이의신청과 달리 복잡한 서류 작업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의신청
 대상을 선택하여 접수하는 방법
 - 요양기관은 이의신청서 작성용이, 이의신청과 동시에 접수증 발송, 이의신청 진행과
 정 조회, 불필요한 행정 비용 감소 등의 장점이 있음
 - 심평원은 이의신청에 대해 자동접수, 색인, 자료확보, 반송 등 일괄 처리

1) 웹 이의신청시스템 접속

요양기관업무포털 정신	·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환수/정산으로 김	접속
HIRA X 요양기관업무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검색 ▼ 오 검색 ★ 물계찾기 ☰ 사이트립 쉽사기준 중합서비스	$\overline{\mathbf{O}}$
업무안내 의료기준관리	진료비청구 정산관리 모니터링 자동차보험 정보화지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 재심/미역신청/환수/정산 • 안내 • 지십/이의신청/환수/정산 • 재심/시의원수/정산 • 이익신청/환수/정산 • 너익신청/환수/정산 • 보일자료제출 • 미익신청(재심사/환수/정산)등 정산 결과(전산통보기관용) • 정낙심사통보/지종)(서면통보기관용) 	● 심관형구 ● 응급역료비용 대지급 형구 ● 전료비확인요형 • 안내 • 안내 · 진료비확인요형 • 심관형구(new) • 철구 • 긴급의료지원비 확인 • 심관형구 전환과정확인 • 철구 • 긴급의료지원비 확인 • 심관형구 보일자료제출 • 성관 • 전료비 후인요형	
금 금 금 ☆<		
바로가기 메뉴 실시간 자주찾는 메뉴	응지사항 + 보도자료 + 자보알림방 + <	II >
 구세별 분락검사 안내 개인정보보호 교육 DUR제도안내 검사진행과장(결과동보서)조회 미익신청/환수/정산 	- 역가용구 바르계 하였는지 확인 요용드립니다. 2018-03-20 - 『신포괄수가제 시법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2018-03-20 - 진료과목/ 내과 세부견문과록 기재 안내 2018-03-20 -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함복 및 금액 (2018.3.1, 기준) 2018-02-28 - (질병군) 응급의료행위 가산대상 함복 및 금액 (2018.3.1, 기준) 2018-02-28	
청구 프로그램 이의신청 프로그램	알림서비스 다운로드 뷰어다운로드 보안프로그램 XP용 프로그램 개인정보처리방침	1

2) 이의신청 대상 명세서 검색

원청구 접수년월, 접수번호 입력 후 조회
 * 구입약가 확인에 따른 정산심사 의약품만 이의신청 가능하며 진료비 청구단계에서 전산자동
 조정되는 의약품은 해당사항 없음

미의신청/환수/정산 x											
☆ 홈 > 정산관리 > 지심/미의신청/환수/정산 > 미의신청/환수/정산 즐겨찾기 추가 출력 팝업 점감요경 도움											
구입 약가 미의신청은 명일련단위(조정)과 코드별(조정)건만 가능하며, 구입약가 확인에 따른 정산심사 약제만 해당됩니다(진료비 청구단계에서 전산조정 약제는 해당사항 없음)											
미의신청결정기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											
제심사조정청구결정기간: 제심사조정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											
- 동일명세서가 일부인정된 경우 나머지 기각된 사항의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서면접수는 가능)											
- 동일명세서의 일부 항목이 이미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접수된 경우, 다른 항목의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 서면접수는 가능)											
◎ 청구내역 조회 원활한 ₩EB접수를 위해 최소 마감일 1주일 걘 에 접수 바랍니다.											
→ 구분 접수년월 ▼ 2018-12-26 □ ~ 2019-03-26 □ Ex) 200509 → 접수번호											
- 이의 신청하실 접수번호를 클릭하세요.											
- 정산차수가 있는 경우에는 탭이,명일련단위(조정), 탭이,코드별(조정)에서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일과 접수번호심사치수경일련정산차수 <mark>정산부사 동</mark> 보일과 보험과 진료분만 청구간수 청구액 조정간수 조정금액 원외치방 원외치방 청구본만 청구대 삼관 사고 한 사고											
2019-01-31 20190206 1 <u>의약품정보조사</u> 부 2019-02-13 보험 내과											

▶ 구분	접수년	월	• 2018-12-26	•	2019-03-2	26 📋 Ex) 200509	> 접	수번호														৭ 조회
- 재심사	조정청구	하실 접	수변호를 클릭하	세요.																		
- 정산차	수가 있는	: 경우에	는 탭01.명일련단	위(조장	병), 탭02,코드	E별(조정)에서 세부나	역을 확	인하시기 바	랍니다.													
접수일	자 접수	변호 심	사차수 청일련 경	<u></u> 험산차	수 정산=	부서 통보일자	보험자	진료분야	청구건수	청구액	조	정건수	조정금맥	원외처빙 조정건수	원외처병 조정금역	상 청구된 1 부담	년 금 청	구액 ^경	형구장애 인기금	심결건수	심결총액	심결보험자 부담금
2019-01-	-31	20	0190291 1		의약품정보	보조사부 2019-02-13	보험	내과		3												
<u>탭01.명</u>	일련 단	위(조정) 탭02,코드	별(조장	령) 탭03,	.명일련 단위(비조정	() 탭	04.접수번:	호 단위 청	구 법0	5.명일련	큰 단위	(환수/정산선	1청)								
⊙명세서) 영제서 내역																					
> 명일련	검색	00000	~ Z99	99																		Q 조회
- 명일련을	클릭하/	시면 아라	H 명일련별 조정	내역을	확인 하실 수	을 있습니다.																
- 명세서 L	H역에서	조회가 (안될 경우에는 지	급불능	된 건은 아닌	민지? 실조정금액이 있	는지? 확	인하세요.														
ļ	경일련		수진자			심사불능코드		8	양개시일		L	내원일식	÷	865	ł수	의료	요금여 종별:	구분	조	조정금액		심사구분
	1		김심평			A		20	18-10-18				43		73		6			297		
⊙ 명세서	별 코드	콀 조정	내역									0 신	청 내역									
. 9	임일련	수진자	조정금액	항	조정사유 코드	분류코드명	약자	상환차액 [정금액	분류코드	줄변호	>		신청사유	첨부유무	명일련	수진자	조정금액	신청금액		분류코	드명	줄변호
	1	김심평	297	03	A	396 디아미크롱서방	정		į,		<		N	0	1	김심평	297	297		396 E OHO	크롱서방정	
o 선택 힝	남목(복수	가능)의										ለ።	입력							× <	A N	유 첨부
요양기	관 문서	친호				문서번호는 입력;	하지 않이	도 제출가능	합니다.			∎신청	영사유									
담당자			김평원]	전화변호	0	2 -	717	8888		∨ 선 (최대	택 항목의 재 1000자까지	심사 조정, (가능합니다	의신청 청 .)	구 사유 및	내역을 기입	합니다.				
																				제출니	1역 미리보기	최종제출
												ļ			AT	피자	GF71					
																10	27					

- 이의신청 최종제출 버튼 클릭 시 완료
- 이의신청 담당자 기본정보 입력 및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
- [사유] 클릭하여 이의신청 사유 입력 저장
- [명세서별 코드별 조정내역] 조회 및 선택하여 이의신청 추가
- [명세서내역] 해당 명세서 선택
- 3) 이의신청 대상 명세서 선택 및 접수

Ⅳ. 구입약가 정산 및 이의신청

4) 이의신청 진행과정 조회 및 처리결과 확인

- 요양기관업무포털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진행과정 조회로 접속
- 접수번호, 접수년도(원청구) 조회하여, 이의신청 진행과정 확인
 처리상태, 처리부서, 담당자 등 확인
- 재신청 및 반송신청

54

- 조회결과 내용을 박스 체크하여 재신청 및 반송 신청
 (단, 처리상태가 접수중일 경우만 반송 신청 가능)
- 처리 완료 건에 대해 결과 선택 시, 이의신청 결과 확인

A 2	> 정산	란리 > 재심/이	의신청/환=	수/정신	난 > 재심/	미의신청/환수,	/정산 진행과정조	ġ.										즐겨찾기 추기	∦ [출력	1 I II	점검요청	등 도움말
) 문	서 접수	일자 2017-01	-01 📋 ~	201	19-03-26	(1) 전	수번호	, [:]	접수년도	(원청구)	Ŧ	반송0	ļĻ									৭ হগ্র
webO 이의신 재심시	의신청 청결정: 조정청	접수에 대하며 기간: 이 구결정기간: 지	접수증을 붙 의신청을 받 심사조정경	출력하/ 받은 날 청구를	시려면 접: '부터 60일 '받은 날부	수방법의 접수종 이내 결정(단, 151 30일 이내 등	동을 클릭하여 출락 부득이한 사정이 결정(단, 부득이한	축하시기 바랍니 있는 경우 연장 사정이 있는 경	다.(web) 가능) 우 연장 :	접수건만 히 가능)	당- 상시출	력 가능)										
0 조:	ij결과																	총 : 2건	재신청	반송	상세제장	화면저장
	순변	Į	접수방법			처리상태	문서접수일자	요양기관 문,	∜변호	접수변호	심사차수	진료년윌	보험자	외래/입원	진료분야	건수	금액	처리부서	담당자	전화변호	심사구분	연변
	1					진행중	2019-04-02				20160714	2016-05	보험	입원	외과			의약품정보조사부			정산	2017019968
	2				결과	처리완료	2018-11-16				20160714	2016-05	보험	입원	외과	1	876,525	의약품정보조사부			정산	2018025064
0 정/	심사목	록																	ł	홍:1건 진	행과정목록	엑셀저장
ť	ŧÜ	정산구분	접수변	Ż	명일련	! _{수진} ;	자성명 정	산연변	정산심	╏싸코드		함	심사	결정액	2항	_	정산금	음액 정산;	\	정산통보말	¦ ₩	서식정보
										Ż	신문안											
	1	정산											150		0			2018	0691	2018-08-	01	k
([]		!)])은(는) 제출된 지	V료 김.	토결과 인	정하며 정산지;	급됨을 알려드립니	ICł.														



V. 자주하는 질문(FAQ)

요양기관 구입약가 청구 가이드





구입약가 정기 확인 관련 일반사항

- Q 1. 가중평균가란 무엇인가요?
- A 분기별 구입한 의약품 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입니다. 다음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 동안 청구하면 됩니다.
 - 가중평균가 〉 상한금액인 경우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
 - 가중평균가 〈 상한금액인 경우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산정
 - 분기별 구입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마지막 분기에 구입한 가중평균가를 구입약가로 산정
- Q 2. 요양기관에서 가중평균가를 확인할 수 있나요?
- ▲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사전가중평균가」에서 의약품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의약품별 가격을 분기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공급분기, 진료년월 선택 후 조회)
 다만, 사전 가중평균가 생성 후 공급내역보고가 됐을 경우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 Q 3. 요양기관에서 가중평균가를 미리 계산 해볼 수 있나요?
- ▲ 요양기관 업무포탈(http://biz.hira.or.kr)로 접속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산정관리」에서 의약품 구입내역 입력 및 파일업로드 하여 가중평균가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57

구입약가 산정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 Q 1. 분기별 가중평균가(구입약가)가 원미만일 경우 단수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계산된 분기 가중평균가 원미만 단위에서 4사 5입하여 가중평균가로 산정하되, 1원 미만인 경우는 1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 Q 2. 의약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가중평균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A 의약품을 구입한 후 반품이 이루어졌다면, 반품한 금액과 수량만큼을 구입분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 예시

분기	구입일	구입/반품	단가	수량	비고	가중평균가(원)
	'19. 10. 2.	구입	80원	100개		93원
'19. 4/4	'19. 11. 1.	구입	100원	300개		(80×100+100×200)/
	'19. 12. 1.	반품	100원	100개	'19. 11. 구입분	(100+200)=93원

- 3. 2019.5.1.에 상한금액이 200원 이었는데 2019.5.31.에 150원으로 인하가 되었어요.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 상한금액 인상·인하 등의 사유로 재고량이 없이 새로 구입한 경우, 단가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구입단가는 새로운 가격으로 구입한 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만약 기존 재고량이 있는데 추가로 구입한 경우라면 단가변경 적용이 아닌, 분기 가중평균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가중평균가가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 4. 1분기 가중평균가 100원이었으나, 구입약가 적용기간인 5월 1일 의약품의 상한가가 인상되어, 기존 재고량이 있는 상태에서 5월 1일에 인상된 가격으로 다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5월 진료분의 구입약가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 A 기존 재고량이 있는 상태에서 재구매 한 경우, 구입약가 산정은 분기 가중평균가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예) 1분기 가중평균가 100원, 5월 1일 상한가 110원, 5월 1일 기존 재고량 200정이
 있는 상태에서 110원으로 거래 한 경우, 5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단가는 1분기
 가중평균가인 100원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입약가 확인 및 검증시스템 관련

- Q 1. 불일치 품목 확인요청을 받았는데 어디서 확인하나요?
- A 「요양기관 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약가 확인」으로 접속하여 해당 년도, 차수 선택 후 조회 하면 됩니다.
- Q 2. 구입약가 확인대상 의약품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 A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어 있는 의약품 중, 실제 구입한 가격과 청구한 가격 차이가 나는 의약품입니다.
- Q 3. 구입한 내역 확인결과 착오 청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 A 요양기관에서 착오 청구한 경우, 요양기관 확인결과에 공급신고 맞음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추후, 구입약가 확정시 차액은 정산 됩니다.

- 4. 공급업체가 공급신고한 공급분기와 규격이 요양기관에서 확인한 내역과 다른 경우, 구입약가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추오가 발생한 공급내역의 수정수량, 수정금액을 "0"으로 입력하고 요양기관 처리결과에 「공급신고 착오」로 선택합니다.
 그 다음, 행 추가하여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적용규격으로 공급내역 입력, 요양기관 확인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선택하고 저장합니다.
- 5. 공급업체가 공급신고한 공급수량과 금액이 거래명세서와 다른 경우, 구입약가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요양기관 확인 결과를 「공급신고 착오」로 선택 후 수정수량, 수정금액란에 거래명세서의 내용을 입력하고, 첨부파일에 해당분기 거래명세서를 업로드 하면 됩니다.
- 6. 구입약가 확인 결과 단가변경 건으로, 실제 의약품을 투약한 날짜는 단가변경일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요양개시일자는 단가변경 이전 날짜로 청구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투여일(실시)일자를 변경일 기재란에 기재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변경일 기재를 누락한 경우라면 해당 환자의 의약품 투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Q 7. 단가변경으로 인정되는 기준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C가변경은 기존 재고량이 없는 의약품을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C단가변경 건이 많을 경우에는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의 단가변경 확인서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하여 단가변경 업로드를 합니다.
 그 외 단가변경 시점의 재고수불대장 및 단가변경확인서(공문, 요양기관장 직인 날인)와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2019년 1분기 구입내역이 없는 경우, 2019년 5~7월 진료분은 어떻게 청구 해야 하나요?
- A 분기별 구입내역이 없을 경우, 의약품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의 가중평균가로 청구 하여야 합니다.
- Q 9. 첨부파일 업로드 시 계속 오류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첨부파일 저장경로가 복잡하면 업로드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장경로를 간단하게 한 후 다시 업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 Q 10. 구입약가 안내(이메일, FAX, SMS)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메일)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접속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좌측 상단 웹메일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팩스)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된 팩스번호로 팩스가 발송되므로 팩스번호 변동 시 업데이트해주셔야 하며 포털접속이 불가할 경우, 의약품정보조사부(033-739-2294~9)로 전화하여 유선통보해야 합니다.
 - (SMS) 요양기관업무포털>진료비청구>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SMS 신청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44Page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입약가 정산 및 이의신청

Q 1. 구입약가 정산심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정산심사는 '구입약가 검증시스템'에서 요양기관 청구단가와 확정단가가 불일치한 품목 중 Α 청구단가가 확정단가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 Q 2. 구입약가 정산통보서를 받은 후, 구입내역에 대해 확인 착오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정 가능한가요?
- A 수정 되지 않습니다. 정산 통보 후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Q 3. 구입약가 확인 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 A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 및 의료급여법 제30조(이의신청)에 따라 정산심사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며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Q 4. 이의신청은 어디서 해야 되나요?
- 「요양기관 업무포털 〉 정산관리 〉 재심/이의신청/환수/정산 〉 이의신청/환수/정산 에서 A 이의신청 대상을 선택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5. 구입약가 확인 건에 대한 이의신청인 경우 줄번호 조정금액까지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 A 의약품 단가착오 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번호단위로 서류를 작성하되, 명일련, 정산된 약품코드, 약품명, 정산금액 순으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6. 구입약가 확인 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그 후 권리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구입약가 확정 후 불일치로 인해 정산된 건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최종 확정단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각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에 따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7. A의약품을 사용하였으나, 요양기관 착오로 구입한 적이 없는 B의약품을 청구하여, 전건 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이 경우, 이의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B의약품은 요양기관에서 코드착오 청구로 확인되어 전액조정 된 건으로 실제 사용한
 A의약품에 대하여 추가청구 하여야 합니다.
- Q 8. A코드로 정산된 모든 의약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 A 구입약가 확인에 따른 단가착오 A코드로 정산심사 된 의약품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단, 진료비 청구단계에서 전산조정 의약품(조정코드 A)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Q 9. 구입약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느 부서로 하면 되나요?
- A 관할 요양기관 해당 본지원으로 이의신청 하되, 본원은 의약품정보조사부, 지원은 고객지원부가 담당합니다.

6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일부개정 2019. 4. 2. 대통령령 제29675호)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 1. 한약제: 상한금액
-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 3. 〈삭제〉
- 4. 치료재료: 구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록

67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개정 2014.8.29. 고시 2014-1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약제에 대한 비용의 결정 등

제2조(구입약가의 산정) ①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의 구입금액(이하 "구입약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 분기별 구입한 약제총액의 합을 총 구입량으로 나눈 가격(이하 "분기 가중평균가격" 이라 한다)을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부터 3개월까지의 진료분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다만,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이하 "상한금액표"라 한다)에 따른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금액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 2. 분기마다 약제구입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제 구입이 발생한 마지막 분기 가중평균가격을 계속하여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다만,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없는 경우 또는 상한금액 인상전에 구입하였던 약제로서 재고량이 없어 상한금액 인상 후 새로 구입하였음을 요양기관에서 증명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구입한 약제의 실구입가격을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 요양기관에서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약제에 대하여는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 범위에서 최초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 요양기관이 반품처리 등으로 재고량이 없는 약제를 종전과 다른 가격으로 새로 구입한 경우에는 처음 구입하여 사용한 약제로 보아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 범위에서 새로 구입한 가격을 분기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의 구입약가로 산정한다.
- 5. 분기 가중평균가격 산출시 적용된 약제구입량보다 다음분기 둘째달부터 3개월간 동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상환받는 약제의 사용량이 많을 경우, 구입량을 초과하여 사용한 약제의 구입약가는 새로운 분기별 가중평균가격이 산정되어 적용되기 전까지 상한금액표에 따른 상한금액 범위에서의 실 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 다만, 구입량보다 초과하여 사용한 시점이 월의 둘째날 이후인 경우에는 다음달부터 산정한다.

68

부록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표"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므로 구입약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료의약품은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에 따라 산정하고, 「약사법」 제41조에 따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는 해당 약제의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구입약가 및 원료의약품의 실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가치점수표 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므로 구입약가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3조(구입약가의 확인) 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제2조 제1항에 따른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기관이 제출한 요양급여비용청구서·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약사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급 내역정보 등을 활용하여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입약가 검증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
의 장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급 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내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구입약가 검증체계에 의하여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분석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확인할 수 있다.

 서면확인 : 해당 요양기관으로부터 약제 구입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실시

 현지확인 : 해당 요양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자료의 확인, 질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
 ④ 심사평가원장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요양기관은 제출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직접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69

현지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요양기관이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2. 민원, 언론 등을 통해 약제 구입과 관련하여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확인되는 경우
- 3. 그 밖에 심사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⑦ 제3항에 따른 구입약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대상 요양기관과 거래한 내역이 있는 약제 공급업자에 대하여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3항과 제7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⑨ 그 밖에 구입약가 확인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평가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공급약가의 조사 등) 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은 구입약가 산정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양기관 및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이하 '의약품 공급업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공급약가(의약품 공급업자가 요양기관에 약제를 공급한 공급금액을 말한다)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사후관리의 방법, 대상기관의 선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 등

제4조(구입치료재료대의 산정) ① 요양급여에 사용된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이하 "구입치료재료대"라 한다)은 요양급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이하 "치료재료상한금액표"라 한다)의 상한금액 범위에서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입치료재료대는 상대가치점수표 중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와 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정 행위수가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구입치료재료대의 사후관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구입치료재료대 산정의 정확성 여부의 확인과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10조에 따른 상한금액의 조정 등을 위하여 장관은 정기 또는 수시로 요양기관의 치료재료의 실구입가격을 조사할 수 있다.

70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대상은 요양급여대상 치료재료와 이와 관련된 요양기관· 치료재료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 사후관리대상기관과 수시 사후관리대상기관으로 구분하여 선정한다.

③ 정기 사후관리 대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재료의 구입자료를 기준으로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 가.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구입가격이 높게 신고된 품목이 많은 요양기관
 - 나. 제출자료 및 증빙자료의 조작이나 오류가 의심되는 요양기관

다. 요양기관과 치료재료공급업자의 자료상 구입가격이 상이한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

- 2. 요양급여비용총액 대비 구입치료재료대 비율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요양기관
- 3. 치료재료의 구입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빈번하게 변경하는 요양기관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치료재료공급업자
- ④ 수시 사후관리대상기관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어 심사평가원장으로부터 사후관리가 의뢰된 요양기관
- 치료재료 구입 시 과도한 가격할인, 구입량할증, 이면계약 등 불공정 거래행위 사실이 확인된 요양기관
- 인원제보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구입치료재료대 관련 민원이 발생한 기관으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기관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치료재료공급업자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장관이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양기관
- 제6조(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확인내역) 제5조에 따른 구입치료재료대의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요양기관과 치료재료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품목별 실거래가격의 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거래단가, 계약서등)
 - 요양기관과 치료재료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할인, 할증유무 등 기타 실거래내역(할인시에는 할인율에 따른 구입가)
 - 요양기관과 치료재료공급업자 또는 치료재료공급업자간의 치료재료 거래와 관련이 있는 금품류 수수내역

제7조(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자료의 제출) ① 장관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대상기관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또는 문서, 증빙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요양기관 및 치료재료공급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을 하여야 한다.

② 치료재료공급업자는 치료재료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에 대하여 거래일자, 거래처, 거래수량, 거래총액이 정확히 기재된 품목별 매출원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8조(구입치료재료대 사후관리 시 행정조치) ① 장관은 사후관리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정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요양기관의 실구입가격의 품목별 가중평균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실구입가격의 가중평균가격 등으로 인하 조치. 다만, 요양기관에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결정된 실구입가격은 상한금액 인하시 반영하지 아니한다.
 - 청구가격보다 실구입가격이 낮은 경우에 있어 청구가격과 실구입가격의 차액을 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하도록 하는 조치

② 사후관리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7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약제 및 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고시 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72

부록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심사청구 내역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심사기준은 공개하여야 한다.

- 1. 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
- 2. 법 제45조 및 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산정내역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지침
- 4.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법 제66조에 따라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제3항에 따른 심사내역 확인을 포함한다)함에 있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대한 자문을 받아 공정하고 타당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후 심사내역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 법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별표 2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한 경우에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
- 2. 영 제22조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금액
- 3. 그 밖에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심사평가원은 제3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대한 질병군 착오청구, 분리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의 확인 및 의료의 질과 퇴원의 적정성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74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개정 2015.12.9. 고시 2015-213호)

제1조(목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모든 약제는 정, 캡슐, 앰플, 병, 통 등 생산규격단위로 등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산소, 아산화질소는 단일단위(각 10L, 45L)로 등재
- 2. 주문공급용 방사성의약품은 최소단위(1mCi)로 등재

⑤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한다. 다만,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1)"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가격을 표기한다.

《 생산규격 단위 약제 급여목록 개편 》

- ▶ 약제급여목록에 등재 단위가 실제 생산규격단위와 최소단위로 혼재되어 있고, 또한 일부의 약품은 생산규격단위 약가 등을 고려시 고가의약품으로 추정되는데도 최소단위(1ml, 1mg 등)로 등재되어 저가의약품으로 보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 ▶ 약제급여목록의 규격단위를 '생산규격' 단위 등재 원칙으로 일괄 정비·시행 (2015.12.9.개정 / 2016.10.1.시행)



1) 조회방법



2) 위치

		업무	안내	의료기준관	리 진료!	비청구	정산관리	모니티	링	자동차보험	정보	화지원	청구소	논프트웨어	검사·인증		
					 의약품관리 의약품공급 청 의약품입고조: OpenAPI 신청 구입약가 허가초과 약제 허가초과 학원 	구상미내역 회 및조회 신청 요법 신청	시면확인	구입약가 - 구입약가 (- 사전가중평 - 구입약가 : - 불일치의약 - 구입약가신	업무안내 경균가 확인 ᅣ품안내 난정관리								
ŝ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의	약가 > 사전가중평	코가								즐겨찾기	추가 출	력 [팝	멉 점검요청	도움
8	양기관						› 약품코드 64	9802620		Q							
공	급분기 2020	\$	년도	1 -	분기		> 진료년월	-	-	-							Q 조회
[주]] 공급업체 신:	그내역을 감안	생성된 기	가중평균가로 공급!	업체 신고내역 변	경으로 가중:	평균가가 변동될 -	수 있음을 알i	궠드립니다.						조	회수: 1	엑셀저장
											공급내역						
변	표준코드	약품	코드	약품명	공급분기	2	민료년월	공급금액	공	급수량	환산규격	제품홍수량		적용규격	가중평균가		상한가
1	8806498026	223 64980	12620	옥시크로린정	202014	202	005~202007	4,410,000		100	300		800	300		147	174
세복	후 공급내역																엑셀저장
변	정보센터 보고일자	구입일자	구입쳐	(사업자변호)	약품명	약품규격	표준코드	공급규격	환산규격	제품총수량	적용규격	공급금액	공급수량	공급단가	공급구분	청구적용단가	가중평균 대상여부
1	2020-02-07	2020-02-03	심평팜	(123-12-12345)	옥시크로린정	300	8806498026223	300	300	300	300	3,087,000	70	147	출고	147	Y
			(T) ALT:	0100 10 10010		200	00004000000000	200	200	200	200	1 222 000	20	147	# 7	147	v

부록



🌒 개요

- 요양기관에서 의약품 구입내역 관리 및 분기 가중평균가를 생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
- 요양기관에서 구입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는 것이 아닌, 구입내역을 입력하여 자체적으로 분기 가중평균가를 계산해보고, 이를 약품비 청구 시 활용할 수 있음
- 🜒 시스템 이용방법
- (1) 산정관리시스템 접속

○ 요양기관 업무포털 〉 진료비청구 〉 의약품관리 〉 구입약가〉 구입약가 산정관리로 접속

HIRA X 요양기관업무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통합겸색 🔻			Q 검색 ★ 접겨찾기 ☰ 사이트앱 심사기준 ⑦								
	업무안내 의료기준	관리 진료비청구	정산관리	모니터링	자동차보험 정보화지원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진료비청구	< 구입약가산정관리	×											
Diagnosis Amount Demand	홈 > 진료비청구 > 의	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입	약가산정관리		즐겨찾기 추가 🛛 출력 🗌 팝업 🗌 점검요청 🗌 도움								
⊘ 진행과정	구입업소조회 및 등록	새로운분기등록											
 ◎ 청구 및 통보관련 신청 ◎ 환자평가표접수 	→ 구입일자 2018-04-	01 🗂 ~ 2019-04-03 🗂			Q 23								
 청구오류 조산원 청구 및 조회 	◎ 분기별 구입내역 조3	1		총 : 4건									
◎ 의약품관리 이야표고그 원그사이내에 내며	분기	입력건수	다운로드	삭제	- 본 메뉴는 요양기관에서 가중평균가를 자체적으로 산정해 보는 용도로								
◎ 확인 확인	2017년34분기	6	다운로드	삭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제 그양야기도 이야푸세터에 시규되 야푸언헤이 고그/바푸티여으로 사저퇴								
 의약측용요고조회 이penAPI 신청및조회 구입약가 - 구입약가 입무안내 - 사건가증평균가 불일치의약통안내 - 구입약가 확인 - 구입약가 관련 - 귀입약가 관련 - 취가초과 약체신청 · 체가초과 약체신청 · 체가초과 학원소법 신청 · 체금제료관리 · 요양기관영상자료제출 · 원격험전 시범사업관련 자료제출 · 입숙화약지 간호사 인건비 적 · 집유치원 세봉사업 					 레이 비율가(드 여름 보이 비료 모든 여름 비해 드 힘, 드립니 여름 비가 드립니 여름 모 가 드 여름 가 들해 날 소설부터 3개 물간 진료분의 구입약가. (성구단가)가 됩니다. 구입약가 년경3회복 이건 주고 입술 모두 소진(반품 등)을 구입단가를 변경가능하며, 새로 구인한 시정(구민도가 변경)라부터 세료은 분기별 가용 평균가격이 산정되어 적용 하기 진까지 구법약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입약가(단가)를 변경한 경우에는 구입단가 변경을 미후 구입분 만으로 새로운 가용평균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요약기관 자체 산정) 								

부록

(2) 구입업소 등록 및 구입내역 등록

♠ 홈 > 진료비청구 > 의 구입업소조회 및 등록	약품관리 > 구입약가 : 새로운분기등록	> 구입약가산정관리			즐겨찾기 추가 🏾 출	력 팝업	점겸요청	성 도움말
> 구입일자 2018-03-	01 📺 ~ 2019-03-2	7 💼						Q 조회
⊙ 분기별 구입내역 조호	žI		총 : 4건	구입업소등록및조회				×
분기	입력건수	다운로드	삭제	사업자번호	사업자명			Q 조회
2019년 14분기	6	다운로드	삭제					
2018년 44분기	4	다운로드	삭제	▌ 구입업소		총 : 2건	행추가	행삭제
2018년 34분기	4666	다운로드	삭제	사업자변호		구입업소명		
2018년24분기	45	다운로드	삭제	124-31-23123	심평제약			
				321-32-13123	(주)심평			
					저장 닫기			

- (3) 구입내역 입력
 - i) 구입의약품별 입력 방법
 - 구입일자 : 거래내역서상의 구입일자 기재(예시: 20170501)
 - 구입일자 입력시 계약일자는 자동 입력되나, 구입일자와 계약이 다를 경우 「계약일자」로
 수정
 - 수량 : 소수 셋째자리에서 4사5입, 둘째자리까지 기재
 (포장단위 구입한 경우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상에 기재된 규격/단위로 수량 환산 하여 기재)
 - 입찰구분 : 입찰이 없는 경우 N, 입찰이 있는 경우 Y
 - 최초구분 : 분기구입, 최초구입, 반품/소진 후 구입, 상한금액 인상 후 구입 선택

분기별구입내	역조회 🗸 본 메뉴는 요양기관에	I서 가중평균가를 7	다체적으로 산	정해 보는 용	용도로 사용	하시면 됩L	.ICł,						
> 년도 2019	曲 → 분기 1분기 ▼	> 약품코드	q	٤									Q 조회
✓ 사용법 : 신규(수정()	(행추가->의약품구입상세내역 입력-> 대상행클릭->상세내역 수정->저장) <	> 저장) 삭제(대상행클릭->	행삭제-> 저질	5					ě : ۱	0건 행추가	행삭제 엑셀	서식받기	엑셀업로드
약품코드	약품명	계약일자	구입일자	규격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가중평균가	구입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최초구입	입찰구입
640002510	씨제이크레메진세립(구형흡착탄)	2019,01,02	2019,01,02	2	g/포		0						
◎ 의약품구입상	AII			« ‹	1 7	0 015	2071 44	보기 🗸	>	1		-	저장
약품코드	640002510 Q	약품명		씨제이크레이	베진세립(구형흡착	규격		2				
단위	9/포	제약회사(수업	입업소)	씨제이헬스9	베머(주)								
구입일자	2019-01-02	수량		74			계약일자	ŀ	2019-01-02	-			
금액	원	단가	[원		입찰구입	I		•			
최초구엽	· ·	구입업소명			۹ 7			록변호		-			
참고사항													

E.

ii) 엑셀 서식을 통한 일괄입력

○ 엑심	넬 서식 다운	로드 >	구입내	역 '	입력) :	저징	; 〉 언	셀 업	로.						
분기별구입내역	조회 🗸 본 메뉴는 요양	기관에서 가중평	균가를 자체적으 <u>며</u>	로 산정히	H 보는 용	도로 사용	하시면	됩니다.								
→ 년도 2017		▼ → 약품코	15	Q												Q 조회
✓ 사용법 : 신규(\$ 수정(대	행추가->의약품구입상세내역 상행클릭->상세내역 수정->	입력-> 저장) 저장) 삭제(대상형	생클릭->행삭제->	저장)							총 : 6건	행추가	행삭제	엑셀서식받	기 역	셀업로드
약품코드	약품명	3	계약일자	구입일;	74 74	규격	단위	수량 !	관가 i	금액	가중평균가	구입업소명	사업자등	등록번호 #	최초구입	입찰구입
640000480	바난정(세프포독심프록세틸).	.(0,1g/1정) 2	2017, 08, 01	2017,08,	01	1	정	400	633,6	253,44	0 634			1	분기구입	예
파일 홈 응 작 분여넣기 문 비복, 클립보드	삼입 페이지 레이아: 라내기 사 · · 시 복사	못 수식 v 11 v v 🖉 v <u>가</u> v 글꼴	데이터 검토]가가 === - 백례 - === 5	¥ = =	기 ⊘・ €E #E	한 텍스 (1) 병합 맞춤	트 줄 바 하고 가·	꿈 운데 맞춤 ▼ ঢ	일반 달 ~ % 표시 ?	, (* 문론 (80 -90 조건부 서식* 서 54 스	표 셀 식 * 스타일 * :타일	문문 문 문 삽입 삭 성 성	× ₩ 제 서식	∑ 자동 ▼ 채우	·합계 * - ·기 * 전 ·기 * 전 ·기 * 편집
A20	r : ∧ √ Jx B	C	D	F	F	G	н	Т	П		ĸ			M		N
1 약품코드	약품명	계약일자	구입일자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구입업소	명사	··업자등록번호	최초	- 구입	입찰구	입	
2 A19501271	메노칼비강분무액50	20110503	20110503	1.4	ml/병	1,000.0	222.0	222,000.0	구입업체		1234567890	A		Y		
3		반드시 8자리	반드시 8자리								반드시 10자리	A : 분기구입	2	Y:0		
4		숫자만 작성	숫자만 작성								숫자만 작성	B:개원이루	▣ 최초구입	N:아니	오	
5		(-, .) 삭제	(-, .)삭제								(-) 삭제	C:반품/소	진 후 구입			
6												D:상한금역	백인상 후			

(4) 산출된 가중평균가 확인

구입약가 산정관리시스템의 메인화면에서 입력건수를 선택하여 계산된 가중평균가 확인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분기별 가중평균가 활용

★ 홈 > 진료비 구입업소조:	비청구 > 의 회 및 등록	약품관리 > 구입약가 > 구 새로운분기등록	입약가산정	관리							즐기	찾기 추가	출력 함입 [점겸요청] 도움말		
, 구입일자	2018-04-0	01 🧰 ~ 2019-04-01 (Q 조회		
분기별 구입	입내역 조호	Č.			총 : 4건												
분기	1	입력건수	다음	온로드	삭제	- 본 메뉴는 요양기관에서 가중평균가를 자체적으로 산정해 보는 용도로											
2019년 14	4분기	6	CHE	225	삭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2018년 44	4분기	4	CHE	문로드	삭제	- 실제 구입악가는 의약품센터에 신고된 약품입체의 공급/반품내역으로 산성될											
2018년34분기		4666	CHE	운로드	삭제	 - 분기별 가증평균가격은 다음 분기 둘째달 초일부터 3개월간 진료분의 구입약가 (청구단가)가 됩니다. 											
2018년24	1분기	45	CHE	운로드	삭제												
분기별구입니 > 년도 2019	.ዘ역조회 9 (***	 ✓ 본 메뉴는 요양기관 > 분기 1분기 ▼ 	에서 가중평 > 약품:	! 균가를 자체적: 코드	으로 산정해 보는	용도로 시	·용하시면	됩니다.							Q 조회		
사용법 : 신구 수정 약품코드	구(행추가-> !(대상행클릭	의약품구입상세내역 입력 릭->상세내역 수정->저장) 약품명	-> 저장) 삭제(대상	행클릭->행삭제 계약일자	->저장) 구입일자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총 : 6건 가중평균가	행추가 구입업소명	행삭제 엑셀서식 사업자등록변호	일받기 약 최초구입	^{엑셀업로드} 입찰구입		
640000480	바난정(/	네프포독심프록세틸)_(0,1g	9/1정)	2019,02,01	2019,02,01	1	정	400	633, 6	253,440	634	(주)심평	321-32-13123	분기구입	GI		
640000480	바난정(/	네프포독심프록세틸)_(0.1	g/1정)	2019,01,04	2019,01,04	1	정	300	633,6	190,080	634	(주)심평	321-32-13123	분기구입	예		
640000520	베이순정	10,2밀리그램(보글리보스)	.(0,2mg/	2019,01,08	2019,01,08	1	정	300	120,6	36, 180	121	(주)심평	321-32-13123	분기구입	예		
640000530	베이순정	10,3밀리그럼(보글리보스)	.(0,3mg/	2019,01,07	2019,01,07	1	정	600	149,4	89,640	149	(주)심평	321-32-13123	분기구입			
640000530	베이순정	10,3말리그램(보글리보스)	.(0,3mg/	2019,01,02	2019,01,02	1	정	600	149, 4	89,640	149	(주)심평	321-32-13123	분기구입	OH		